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機能과 使命

許 善 道*

目 次

- | | |
|--|----------------------------|
| I. 緒 言 | III. 大學博物館 教育機能의 不實과 그 活性化 |
| II. 大學博物館 教育機能의 缺如와 民族傳統文化 傳承 및 閐揚의 虛相 | IV. 大學博物館의 教育機能과 法制上 現況 |
| | V. 結 言 |

I. 緒 言

大學博物館은 大學에 設置된 博物館이다. 大學의 博物館도 博物館인만큼 人類 내지 民族文化에 관한 각종 資料(遺物·遺蹟)를 蒐集 保存 調査 整理 研究하여 展示 公開함으로써 人類 내지 民族文化를 傳承 啓發 閐揚시키는 工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大學博物館은 大學에 設置된 教育機關의 하나인만큼, 大學에 設置된 모든 機關의 機能과 使命이 그러하듯이, 博物館機能中 展示 公開하는 機能, 즉 學生들에 대한 教育的 機能과 使命이 第一次的으로 強調(重視)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韓國大學博物館에 負荷된 機能과 使命은 民族文化財의 保存과 그 學術的(研究的) 社會文化的(地域社會文化開發)機能과 使命도, 특히 國·公立이나 私立博物館의 設置가 아직도 未備 零細한 오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重且大하지만 大學博物館의 基本使命은 무어니해도 大學教育에 必要한 視聽覺 資料를 갖추어 이를 體系있게 陳列 展示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觀覽케 함으로써 그 教育效果를 거두는데 있다.

大學博物館의 이 같은 機能과 使命은 지금으로부터 25年前 1961年 5月에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처음으로 結成될 때 이미 確固히 定立 公表되었던 것이니,多少 긴 感이 없지 않으나 아래에 옮겨 보기로 하겠다.

教育에 있어서 實物에 依한 直觀教育이 얼마나 重要한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從來의 우리나라 教育이 抽象的 觀念的 教育方法에 치우쳤던 弊害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歐美諸國에 있어서 博物館事業이 重要視되고 發達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國家財政의 窮乏과 直觀教育에 對한 認識不足으로 一般 博物館의 運營이 不振한 現實情에 鑑하여各大學의 博物館 또는 參考品室의 重要性은 倍加되고 있읍니다.

* 國民大學校 博物館長

이에各大學의 博物館 또는 參考品室 關係者들의 오랫동안의 輿望에 따라 大學博物館事業의 協助와 促進을 爲하여 지난 5월 5일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創立되었습니다.

本協會는 會則에 規定된 바와 같은 여러 方面의 事業을 하겠거니와 特히各大學의 博物館 또는 參考品室의 運營에 關한 學術的 技術的 協助를 圖謀하고, 또한 現在 博物館이나 參考品室이 없는 大學에는 이터한 施設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協力할 것입니다.

大學博物館은 主로 歷史 美術 民俗 考古學 自然科學 等에 關한 資料를 蒐集 保存 및 研究하고, 이것을 學生們의 教育에 利用되도록 할 것인 바, 그중에서도 우리의 過去 文化財의 蒐集 保存 및 研究는 우리나라 大學博物館의 最大의 使命인 줄 믿습니다. 더우기 各地方의 大學博物館은 그 地域의 文化財에 對한 保護 研究 및 普及에 對한 責任을 족야할 것입니다.

實로 우리 大學博物館의 任務는 重且大한 것이 있음을 다시금 認識하는 바입니다.

檀紀 4294年 月 日¹⁾

여기서 우리 모두는 大學博物館에서 遂行해야 할 基本機能과 使命이 어찌해야 하는지 慎重히 考慮해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博物館施設의 各大學에의 擴充을 期約한 協會의 根本目標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博物館에서 對象으로 하는 文化財라 하면 거의 民族의 傳統文化財만으로 좁게 設定하는 狹見에서 벗어나 마땅히 人類文化全般에도 미쳐야 함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이 前後에는 傳統文化에 대한 教育의 重要性, 특히 그 實物에 의한 直觀教育의 重要性이 政策當局에도 깊이 認識된 餘澤이겠지만, 檀紀 4288(1955)年 8月에 公布된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第1063號)에 이미 大學에서의 博物館設置가 規定(獎勵)되고, 以後 1967年 9月에 同基準令이 改正될 때 보다 強化 義務化되었으며(아래 p. 44 參照), 大學博物館의 뜻있는 人士 역시 이 點, 즉 教育機能에 대해 恒時 關心과 注意를 喚起 鼓吹시켰던 것이다.²⁾

그러나 以後의 大學博物館의 運營과 活動을 冷澈히 觀察 整理해 보면, 校內에서의 教育的 活動은 계속 萎縮과 不振이 指摘되며 反해, 約 40萬點에 達하는 重要文化財를 收藏하게 된 實績이나 校外에서의 學術的(調查·研究) 活動은 크게 自讚할 정도로 活潑하였다. 이에 대한 詳細한 說明과 數值 等은 安承周·李隆助·鄭永和 館長의 發表에서 밝혀지겠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각 박물관마다 여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교육적 기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이 현실적 제한 여전으로 말미암아 자칫 소홀히 되기 쉽다고 생각되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³⁾

○전시에 있어서도 전시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어 학생들이 언제나 부담없이 제한없이 출입하여 관람할 수 있는 대학은 수개 대학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개방시간의 제한 또는 신청이 있어야 개방하는 실정이다. 각 대학이 부속박물관에 쏟는 예산에 비하면 학생들의 관람수는 매우 빈약하다는 결과로 나타나서 대체로 관람하는 학생수는 많아야 재적 학생의 반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때로는 1, 2회의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하

1) 古文化 第1輯(1962年 6月) p. 1 및 第21輯(1982年 12月) p. 10 參照

2) 古文化 第17輯(1979年 5月) pp. 23~33 및 第21輯 pp. 5~30 參照

3) 古文化 第21輯 p. 30

고, 특별강연회를 가지기도 하나,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되는 것 같지는 않다.⁴⁾

○ 소장품은 언제나 진열하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박물관의 수장품은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므로 박물관으로서는 공개하여 자료로서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없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창고 속에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무관심도 문제이다. 종합대학인 경우 학생수는 1만 5천명 내외가 되는데도 연간 박물관을 찾는 학생수는 3·4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한 일이며, 박물관을 통한 교육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⁵⁾

———— ◇ —— ◇ —— ◇ ——

○ 대학박물관은 그동안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학술적인 면에서 유물유적 조사발굴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⁶⁾

○ 대내적인 활동에 비하면 대외적인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자료조사와 발굴조사에서 많은 활약과 성과가 있었다.⁷⁾

이같은 實情은 大學博物館協會의 運營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協會創立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前後 25回 57人의 學術發表主題나 總99篇에 이르는 「古文化」(協會機關誌) 收錄의 論說, 그리고 간간히 試圖된 發展方向의 提示에서 大學博物館의 教育機能向上을 위한 模索과 努力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래 表 2,3 및 p. 38 參照)

이리하여 創立 四半世紀를 맞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會員校(博物館設置大學)가 18個校에서 58個校로 크게 늘어나고 莫大한 量의 民族重要文化財를 收藏하며 (1982年 당시의 統計로 韓國의 各大學博物館에서 收藏하고 있는 遺物總數는 約 40萬點에 이르는 바, 이는 國立博物館 收藏遺物總數의 約 5倍에 該當한다고 한다. 古文化 第21輯 p. 27 參照), 總23回의 聯合展示會와 計25回의 學術發表會를 開催하고, 機關誌「古文化」를 27輯까지 刊行하였을 뿐더러, 밖으로 國家의 重要文化施策에 適宜 意見을 開陳하며 나아가 86文化올림픽에 會員校 10個校가 參加하고(88文化올림픽에는 全會員校 參加計劃), 아래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今年 1년의 實績에서 미루어보아도 그間 大學博物館이 大韓民國의 傳統文化 啓發과 闡揚에 그 열마나 至大한 貢獻을 하였는가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즉 發掘許可 總 36件中 그 70%인 25件을 大學博物館이 담당하였다.

<表 1>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1986년 발굴 허가내역⁸⁾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합천암 수불지구	삼국	경남합천군봉산면	東亞大壯博物관	85. 12. 31~ 86. 5. 30
황룡사지	통일신라	경북경주시보황동	경주고적발굴조사단	86. 1. 1~ 86. 12. 31
창원도계동고분	삼국	경남창원시도계동	昌原大박물관	1. 12~ 2. 25
이충무공선소유적	조선	남전여친시시전동	明知大忠국전축문화연구소	1. 30~ 2. 28

4) 古文化 第21輯 p. 7

5) 古文化 第21輯 p. 18

6) 古文化 第21輯 p. 31

7) 古文化 第21輯 p. 8

8) 「월간문화재」 第29호(1986. 12. 1) p. 2. 鄭在纁氏 執筆

죽죽리폐사지	통 일 신 라	경남합천군봉산면	국립진주박물관	2. 20~ 3. 31
입점리고분	백 제	전북익산군웅포면	문화재연구소	2. 27~ 4. 20
월성해자	신 라	경북경주시인왕동	경주고적발굴조사단	3. 1~12. 30
미륵사지	백 제	전북익산군금마면	익산미륵사지발굴조사단	3. 3~11. 30
동천동 고분	통 일 신 라	경북경주시동천동	국립경주박물관	3. 17~ 3. 23
영덕파시동 고분	신 라	경북영덕군영해면	국립경주박물관	3. 26~ 5. 4
석장사지	통 일 신 라	경북월성군현곡면	東國大경주캠퍼스	3. 24~ 6. 10
목면요지	백 제	충남청양군목면	국립공주박물관	3. 24~ 6. 10
교성리선사주거지	청동기 시대	충남보령군오천면	국립부여박물관	4. 28~ 5. 17
중부고속도로구간		경기(광주·이천·안성)	忠北大의 10개기판	4. 20~ 6. 20
내 문화유적		충북(음성·진천·청주)		
장천리선사주거지	청 동 기	전남영양군서호면	木浦大박물관	5. 3~ 6. 23
늑도폐총	청 동 기	경남삼천포시늑도	釜山大박물관	5. 19~ 6. 19
복천동고분	가 야	부산시동래구복천동	釜山大박물관	6. 1~ 6. 30
육고리폐고분	백 제	충남논산군가야곡면	公州師大박물관	6. 3~ 7. 3
영천리석실분	백 제	전남장성군북일면	全南大박물관	6. 13~ 6. 30
용강동고분	통 일 신 라	경북경주시용강동	경주고적발굴조사단	6. 16~ 8. 31
복천면선사유적		북제주군조천읍	濟州大박물관	6. 13~ 7. 2
여천동굴	구 석 기	충북단양군가곡면	忠北大박물관	7. 9~ 7. 29
천원백제사산성	백 제	충남천원군직산면	忠南大백제연구소	8. 7~11. 30
반여동 고분	가 야	부산시해운대구	東義大박물관	8. 12~ 9. 14
선림원지	통 일 신 라	강원도양양군서면서림리	東國大박물관	8. 2~ 8. 25
이성산성	백 제	경기광주군춘궁리	漢陽大박물관	8. 13~87. 2. 12
충주산성	삼 국	충북충주시충원군	忠州工專박물관	8. 25~12. 30
공산성	백 제	충남공주시 산성동	公州師大박물관	9. 30~12. 18
주암珉수물지구		전남승주군보성군	全南大외 14개 기관	86~87
합천珉수물지구		경남합천군거창군	慶尙大외 8개 기관	86~87
송지연폐총	철 기	전남해남군송지면	木浦大박물관	10. 2~11. 22
임하사지내탑지	조 선	경북안동시우동	安東大박물관	10. 5~12. 30
송국리선사유적	청 동 기	충남부여군조천면	국립중앙박물관	10. 10~10. 29
부여동남리이궁지	백 제	충남부여군부여읍	忠南大박물관	10. 25~12. 15
문주리와요지	조 선	충북충원군이류면	忠州工專박물관	10. 31~11. 10
성산동고분	가 야	경북성주군성주읍	啓明大박물관	10. 31~12. 30

그러나 基本的, 第一次의 機能과 使命을 忘却하고 疎忽視한 大學博物館의 이같은 主客顛倒의 本末倒置의 運營과 活動으로 말미암아 우선 大學內에서 學生과 學校當局이 博物館을 좇게 考古·歷史·美術專攻學徒에게만 必要한 實習室정도로 認識하게 되고, 심지어 政策當局에서도 大學博物館을 文敎部보다 차라리 文公部에 보다 가깝고 必要한 存在인 것으로 잘못 認識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錯覺은 급기야 지난 84年 12月에 制定된 博物館法(文公部主管)에 大學博物館이 包含되지 않았음을 물론이고, 거슬러 올라가 82年 12月 30日에 改正된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11153號)에서는 1955年 8月以來 存續해 왔던 博物館設置條項이 뿌리채 없어지는 어이없는 錯誤를 가져왔다. (아래 p. 45 參照) 이제 大學博物館은 現行 法制上으로는 그 어디에도 根據가 없는 孤兒의 存在로 轉落하고 말았다.

大學博物館은 決코 大學에 附設된 民族文化財의 收藏庫나 學術(研究) 내지 文化機關이 아니며,

또 그것은 좁은 意味로 歷史學徒들에게만 必要한 實習場이 絶對로 아니다. 大學博物館은 韓民族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後孫에게, 國史가 必須敎養이듯이, 先祖가 남긴 文化財에 직접 대하게 하고 이를 가르칠 義務가 있다. 會員校가 58個로 擴增되었다 하지만 이는 4年制大學만 해도 100個를 넘은 現實에서 떠쳐보면 그 折半정도에 不過한 太不足이다. 民族傳統文化에 대한 教育이 모든 大學生에게 必須의으로 課해져야 한다면 그 教育을 實物로써, 直觀教育으로써 뒷 받침하는 博物館 역시 그 어느 大學에도 必須不可缺하게 存在해야 할 教育機關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會員校가 이 時點에서 第一먼저 생각해야 할 바는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機能과 使命이 위와 같이 重且大함에 비추어서 아직도 博物館이 設置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4年制大學에 하루속히 博物館이 設置 開館되게끔 힘을 모아 積極 啓蒙 協助하는데 努力해야 할 터이다. 다음으로 現在 開設되어 있는 大學博物館중에도 여러가지 與件上 그 運營과 活動이 심히 未備 不振한 會員校博物館이 殆半 以上이라는 이 숨길수 없는 現實을 똑바로 直視하고 이를 基準으로 하여 —다시 말해 學術·文化部面에까지 그 機能을 상당히 發揮하고 있는 몇몇의 大學博物館을 基準으로 하지 말고— 오늘의 韓國大學博物館의 運營과 機能을 活性화하는데 焦點을 맞추어 檢討 論議해야 할 터이다.

協會創立 25周年을 맞는 이 時點에서 그間 大學博物館의 運營에 關與해온 우리一同은 그야말로 泣斬馬謖, 뼈를 깎는 굳고 처절한 心情으로 大悟 覺醒하여 大學博物館의 올바른 進路와 活動을 새로이 定立 展開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大學設置基準令 역시 하루속히 元來의 趣旨대로 改善 補完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確信한다.

筆者는 원래 末學인데다가 平素 文獻史學에 關心을 가져왔던 터로, 大學博物館協會長이란 重責을 맡을 資質을 뒷걸음쳤는데다가 이같은 發表를 行할 處地가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일찍부터 奉職하는 學校마다 相對的으로 博物館에 더 가까운 同僚教授가 없었던 까닭으로 오랫동안 博物館을 맡게 되고, 그러므로 協會에도 깊이 關與하게 되었는데, 특히 86 文化을림픽 參加를 前後하여 校內와 校外는 勿論, 우리들 大學博物館 從事者相互間에도 그 基本機能과 使命에 대해 깊이 再考해야 할 餘地가 있다고 思料되어 敢히 이같은 蠻勇을 저질렀다. 古文化 第17·21輯에 收錄된 孫寶基·秦弘燮·安承周·尹世英諸氏의 玉稿에 크게 힘입었음을 깊이 感謝하면서 江湖諸彥의 忌憚 없는 叱正과 鞭撻을 바라마지 않는다.

II. 大學博物館 教育機能의 缺如와 民族傳統文化 傳承 및 閐揚의 虛相

여기서 暫時 눈을 돌려 8·15解放 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으로 크게 主唱 嘉勵 鼓吹되어 온 民族傳統文化의 傳承과 그 閐揚의 實相을 直視할 必要가 있다. 筆者の 觀察이 너무나 偏狹하고 過度할는지 모르나 오늘날의 우리 民族文化傳統의 傳承과 啓發은 口頭나 文書로 크게 高唱되는 바와는 달리, 國民各自가 몸으로 體驗하고 實踐하는 內面의 實相에 있어서는 심히 形式的 皮相의인 것으로 짐작된다. 於焉 半世紀에 이르도록 우리 傳統文化의 傳承과 閐揚으로 하여금 이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狀態로 만들고 또 머무르게 하는 要因은 첫째, 그것에 대한 根本的 理解는 전혀 없이 오로

지 ○× 表示의 多選支擇一의 客觀式 考查方式에 바탕한 國史敎育과 둘째, 傳統文化의 實際와 奧妙를 담고 있는 祖上傳來의 數千年된 文字(漢文)를 한 字도 使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한글專用의 語文政策, 그리고 세째, 實物에 바탕하지 않고, 無條件 例친대 高句麗文化는 썩썩하고, 百濟의 그것은 부드러웠다, 高麗 象嵌青磁는 世界的으로 優秀했다, 朝鮮後期 實景山水畫의 特徵은 이리이려하다는 式으로만 暗記케 하는 즉, 博物館에서의 直觀敎育을 처음부터 排除 例如한 形式的 皮相的 傳統文物敎育에 말미암은 것 같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오늘의 實況을 보다 正確히 診斷·理解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論及함이 마땅하나 形便上 省略키로 하고, 세째에 대해서만 多少 言及하고자 한다. 이 역시 되도록 출여서 舉目式으로 簡單히 論及하려고 하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大學에서 만은 모든 學生에게 博物館敎育이 必須의으로 課해져야 한다는 說明이기도 하다.

1) 무론 어느 사람이고 한 民族의 一員으로 태어난 以上自己民族의 文化와 歷史를 직접 알고享有하며 이를 啓發·闡明할 權利와 義務가 賦與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現實情은 이 점에서 심히 暗澹하다. 周知하시되 國民學校로부터 中學校와 高等學校는勿論이고, 그 以上的 上級學校에도 거의 博物館施設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4年制大學에도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그 折半정도에만 博物館이 設置되어 있는데, 그마저 收容能力이 全體 學生數에 비해 懸隔히 不足할뿐더러, 重要文化財의 安全保管이란 구실아래 圖書館上層이나 地下層 등, 一般學生의 尋訪이 심히 不便한 場所에 위치하고 있다. 더우기 그나마 심한 경우는 一般學生에 대한 公開展示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實情에 있고, 公開展示되는 경우에도 觀覽時間이 심히 制約되어 대부분 그 出入門이 “觀覽은 館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는 팻말과 함께 굳게 잠겨져 있음이 數三年前까지의 숨길 수 없는 實相이었다. 이리하여 實際로 博物館이 設置되어 있는 大學에 다니는 열마안되는 學生들도 그 大學의 博物館을 찾아가 觀覽한 經驗은 고사하고, 그 位置조차 모르고 卒業하는 경우가 十中八九인 것이다. 여기서 잠시 그나마 博物館施設이 있는 4年制大學에서 修學하는 人員數가 全體 大學生 내지, 全體 國民數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想起해 볼 必要가 있다. 그 數字는 國民中 极히 一部에 不過하고 將次 모든 部面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 棟樑이 될 4年制大學生 中에서도 折半에도 못미치며, 全體 國民數와의 對比는 아무리 늘려잡아도 400 내지 500分의 1에 不過한 터이다.⁹⁾

한편 그間 우리나라라는 다른 開發途上國이 羨望하리만큼, 急速한 先進化를 이룩하였고, 또 이룩하는 過程에 있다. 따라서 農村에서조차 傳統文物의 淹滅이 날로 激甚할뿐더러, 大多數 人口가 都市

9) 計算의 便利上 今年度 大學入學適齡人을 基準으로 따져보면 今年度 大學入學適齡一數는 約 120萬(學力考査應試者數 約 70萬)이고, 大學入學定員(卒業定員이 아님)은 約 17萬이니 全體國民中 大學生의 比率은 約 7分의 1弱이다. 그런데 全體國民의 約 7分의 1弱정도에 不過한 이 大學生들마저도 모두가 아니고 그 折半 정도밖에는 現在 博物館이 있는 大學에서 修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教育施設上 博物館에 接할 수 있는 人員은 全體의 約 14분의 1弱정도이고 그들마저 實際는 上記한 바와 같이 在學中 단한번이라도 博物館을 직접 觀覽한 사람은 十中八九에 지나지 않으니 그 全體國民上의 比率을 아무리 늘려 잡아도 140分 내지 150分의 1에 不過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現下 우리나라 國民中 約 150名中 1名은 正規 學校施設을 통해 博物館을 見學한다는 計算이나, 實相은 大學의 入學定員이 解放 이후 每年漸增하였고 특히 現在와 같이 約 17萬으로大幅增加한 것은 不過 數年前의 일이니 그 實地數字는 400名 내지 500名中 1정도의 比率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로 集中하는데, 都市에서는 歐美先進國에서와는 달리 國·公立이나 私立의 各種 博物館을 住居 가까이에서 거의 찾을 수 없다. 現在 日本에서는 博物館數가 約 3千 以上이고 美國은 約 2萬 以上이라 하니 우리나라의 博物館數(國公立과 私立博物館 總計)는 人口를 基準으로 할 때 그 比率이 先進外國과 對比하여 約 100分의 1에도 못미친다 한다.¹⁰⁾ 그러므로 國民學校나 中·高校의 修學旅行 때, 國立中央博物館 또는 慶州 등 古都博物館을 정녕 走馬看山格으로 한번 둘러보는 機會外에는, 上記 一部 4年制 大學生을 除外한, 온 國民이 傳統文化文物에 自己 몸과 눈으로 직접 접할 機會는 現行 教育制度 내지 施設上, 源泉的으로 阻止 封鎖당하고 있는 實情이다.

십자어 中·高校 내지 大學의 國史教師들마저 博物館施設이 全無한 學校(大學)에서 教育 받음이殆半인 만큼, 그 大多數가 受學過程에서 앞으로 自己가 가르칠 對象의 實物에 한번도 接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고도 그 職務遂行上에 아무런 支障과 不便을 招來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民族文化傳統의 傳承과 閡揚의 實相인 것이다. 實物의 그림자조차 한번도 보지 않고 오직 注入되고 暗記된 知識이 그 어찌 真正하고 健全하며 實用될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오늘날 우리 國民의 모두는 우선 家庭이나 職場에서 子女나 後輩들에게 傳統文化를 올바로 說明 傳承시킬 수 없음을勿論이고, 나아가 外國人을 對했을 때 民族構成員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나가 져야할 最少限의 義務와 權利인 民族文化財의 識別 내지 紹介의 使命을 전혀遂行할 수 없는 實情에 있다.

東西古今 언제 어디서나 그나라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그나라 教科書에 나오는 文化財정도는 歷史·考古·美術專攻學徒가 아니더라도 一定水準의 具體的 玩賞眼과 識別力を 갖추고 있으리라 期待하고, 또 실제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西歐를 旅行한 뜻있고 老成한 公職者들로부터 國民의 次元에서의 博物館教育의 必要性과 그 水準 및 效率이 상당함을往往 듣게 되는데, 오로지 오늘의 우리나라의 現實만은 이같은 原論과 原則에서 除外되어야 한다. 外國에 나가는 사람이나 外國人과 자주 접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傳統文化에 대한 最少限의 素養教育이 必要한 實情이니, 이러한 바탕과 風土 위에서 그어찌 傳統文化의 真正한 傳承이 이루어지며 民族構成員으로서의 自負와 矜持를心底로부터 가질 수 있겠는가?

모든 우리 國民에게 實物(直觀)을 통한 傳統文化 教育이 必須의으로 要求되고 實施되어야 하는 當爲性과 論理性은 너무나도 簡單·明瞭·平易하다. 즉 ① 우리는 韓民族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以上 그 누구에게도 韓民族의 文化傳統을 傳承·啓發할 權利와 責務가 있다(決코 國史 내지 考古 美術 關係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② 그런데 무릇 어떠한 事物이든 이를 真正 올바로 알고 啓發하고 傳承하는 길은 他人의 입이나 글로써 說明하고 傳해주는 바 아니고, 自己自身이 直接 그 原體(實物)에 몸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부딪혀 느끼고 體驗하는 바이다. ③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國民 모두는 그 專攻과 職業과 男女와 老少를 가릴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民族의 傳統文化(文物)에 대해 각자가 직접 對하고 接하여야 하는 것이다.

설사 오늘의 우리 教育與件에多少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將次 이 나라 知識層의 中核을 이루고, 國家發展에 있어 牽引車的 存在가 될 4年制大學生에게만은 傳統文化에 대한 實物教育을 必須의으로

10) 國立博物館 學藝究研室 鄭良謨室長 教示,

遂行해야 한다는 主張은 너무나도 晚時之嘆이 없지 않다.

덧붙여 學生時節 특히 大學生時節에 있어서의 實物을 통한 博物館에서의 傳統文化教育은 우리의 모든 大學生과 나아가 國民全體의 心性을 順和시키고 感情을 豊富洗鍊케 하는데 크게 도움될 터이다. 學生各自가 아득한 雾靄氣의 博物館陳列室에서例전대 三國時代의 佛教美術品이나 高麗의 靑磁, 그리고 朝鮮의 白磁와 書畫 등에 皮膚로 직접 대하고, 마음으로 조용히 玩賞하게 되면, 곁으로 입으로 글로써 暗記하는 바와는 달리, 心底로부터 우리民族이 예로부터 優雅하고 平和愛護의이며, 豊富洗鍊되었던 그 眞粹에 빠져들게 될 터이다. 모든 學生이 특히 優秀學生일수록 白衣民族 云云하면서 多選支撑一의 答案에서는例外없이 우리民族의 心性이 優雅하였고 이를 傳承해야 좋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心性과 行動은 날로 硬直되고 거칠어져 가며, 그 思考方式은 主知一邊倒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大學에서의 博物館教育의 必須性과 重要性은 이같은 面에서도 再三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2) 무릇 어떠한 事物이든 그 實質的 研究와 開發은 그 方面의 專攻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國民的 次元에서 傳統文化에 關心을 갖는 底邊을 據充해야 하고, 그만큼 國史 내지 考古 美術에서 다루는 對象과 內容은 실로 無窮無盡하다. 傳統文化의 對象과 內容은 결코 「要領國史 300項」「豫想問題 200問」式의 思考로는 推想할 수 없을만큼 多樣多岐하다. 筆者와 같은 文獻學徒는 말할 것도 없고, 年輪을 쌓은 考古·美術·人類學者일지라도 全國各地에서隨時로 새로이 나타나는 모든 文化財(物遺·遺蹟)에 대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우기 各遺物에 使用된 素材나 그製作技法 및 用途, 그리고 保存方法 등을 올바로 紛明하기란 不可能하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實質的研究와 開發은 좋게 말해서 綜合學問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느 한 分野의 專門知識도 없는 歷史나 考古學者에 의해서가 아니고, 物理·化學·建築·金屬·機械·土木·天文·地理·農器·武器 등등 온갖 分野의 專攻學者 내지 技術者에 의해서合理的科學의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成果를 가져오려면 우리들 大學博物館에서 온갖 分野의 學徒들로 하여금 學窓時節에 각기 專攻分野의 우리 傳統文化에 대해 博物館에서 직접 接近하게끔 함으로써 그들에게 각기 專攻分野에서의 傳統文化의 啓發意慾을 鼓吹하고 그 機會를 마련해 줌으로써, 즉 同參케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實際로 近年에 이를수록 自然科學을 專攻한 各分野學徒들이, 그들의 學問은 우리의 傳統文化(國史研究)와는 無關하다는 從來의 認識에서 벗어나, 漸次 傳統文化方面에도 視野를 돌림으로써 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專門知識의 參與에 힘입어 새로운 分野의 各種 遺物과 遺蹟이 속속 啓發研究되어 文化財로 指定됨으로써(例, 近來의 渾天儀·自擊漏 및 銃筒·甲冑 등 科學·軍事文化財) 民族文化의 內容을 보다 豊富케 하고, 우리의 珍持를 한층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先民들의 文化가 그 質과 量과 種類에 있어 廣範하고 多樣하며 豊富하였다면, 그만큼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 紛明과 閲揚 역시 넓은 分野의 많은 役軍이 動員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어떠한 事物이든 그것의 發揚과 普及은 그것에 從事하거나 關心을 갖는 底邊(人員)이 널리 擴大되어야 하고, 權力 또는 金錢과 마찬가지로, 文化와 學問 역시 그것이 널리 開放되지 않고 좁은 範圍內에서 몇몇 사람에게만 獨占되면, 반드시 不正과 腐敗가 뒤따르기 마련이니 심히

警戒해야 한다. 事物의 發展과 早期教育 내지 底邊擴充의 函數關係는 저번 아시아競技大會時의 優秀成績獲得에서 그 標本的 事例를 보았거니와, 모든 學術과 藝術 그리고 그 어떤 文物도 이 原則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3) 地下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埋藏文化財나 家屋 깊숙히 숨어 있던 文籍 등의 最初 對面者는 결코 歷史 考古 등 이 方面의 專門學徒가 아니다. 地下에 埋藏된 文化財가 새로이 發見되는 場所는 주로 土木(建築)工事 現場이며, 그러므로 이에 처음으로 接하는 이는 크게 말해 工大系列出身의 現場從事者들이다. 이들에 의해 그 保存과 申告가 처음부터 無視되면 그 아무리 重要的 文化財라 할지라도 그 線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多幸히 그들에 의해서 適宜措置되더라도, 다음 단계로 대부분 法政·經商系列出身인 會社나 公共機關의 管理職들에 의해 그 現場保存과 發掘申告가, 期日內 完工目標達成 등 事業經營上의 理由로, 無視되어 버리면 또한 虛事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考古와 歷史 등 專攻學徒 내지 關聯官廳에서는 이들로부터 通知가 있어야 비로소 알 수 있고, 適宜措置할 수 있는 것이다. 專攻學徒나 關係公務員들이 申告되지 않는 土木現場을 두루 누며 다닐 수는 없으며, 또 申告 없이도 어떤 靈感으로 重要遺物의 出土를 感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거의 茶飯事로 行해지는 家屋의 新築이나 修理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主管하는 主婦가 반드시 歷史·考古·美術系統出身일 理 없으며, 重要文籍 역시 오늘날 上記 專攻學徒의 先代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을 理가 萬無하다.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그 누구에 의해 처음 發見될는지 全혀豫測할 수 없다.

4年制大學 卒業生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在學時節에 傳統文化財의 内容과 價值와 保存에 대한 體系의 教育은 고사하고, 遺物의 一片이나 文籍의 斷章에도 接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國民一般으로서, 그 아무리 民族文化에 대한 誠意가 있다하더라도, 上記의 경우 真心으로 그리고 즉시 適切한 應急(保存)措置와 迅速한 申告節次가 果然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機能과 使命은 이런 面에서 실로 重且大한 것이다. 專門的 實質的 開發이나 土木工事場에서의 現場收拾까지는 안가더라도 우리 國土의 坊坊谷谷에서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隨時 發見되는 傳統文化財의 保存을 위해서는 所謂 세미프로 정도(水準)의 이 方面의 關心者가 많이 늘어나야만 한다. 즉 底邊人口가 크게 擴大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다름아니고 바로 모든 分野의 사람들에게 그 學窓時節에 博物館에서 直觀(實物)教育을 제대로 實施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東西古今 어느 國家나 社會에 있어서도 모든 國家行政은, 따라서 傳統文化에 관한 政策樹立과 그 執行마저도 政界·官界·財界 등 公職者에 의해서 決斷·施行되고(輿論喚起는 言論界), 이 方面의 專門家는 어디까지나 役間諧割에 그치는 바, 이는 順理이다. 이러한데도 8·15解放以後의 우리 傳統文化教育은 이들 公職志望生에게까지 大學課程에서 조차 우리 古典原文의 한 句節이나 傳統文化財의 한 조각도 직접 읽고 對하게 하는 措置와 努力이 아직껏 全혀 行해지지 않고 있다. 政治 내지 言論志望生이나 行政·司法 등 各種 考試準備生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인데, 그들은 우리 古典原典의 讀解나 博物館에서의 傳統文化財 實物教育은 全혀 不必要한 것, 아니 時間浪費 以上的妨害의 인 것으로 알고 있는 實情이다. 政治志望生이나 考試準備生이 博物館에서의 直觀教育의 必要性을 呼訴하거나, 이들에게 이같은 素養을 必須의으로 쌓기하려고 努力하는 指導對策을 일찌기 들은 바 없

다. 이려하고도 所定의 試驗에 합격만 하면 그들은 바로 다음아닌 傳統文化의 保護와 閐揚과 傳承에 대한 基本政策마저도 樹立·監督·決斷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傳統文化財에 대한 是非와 紛爭에 대해서도 그 最終判決을 이들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關係專攻學者는 그 政策의 樹立·決斷·執行 내지 是非(紛爭)의 最終判決에 있어서는 本質的으로 諮問의 地位이고, 助役以上의 役割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려므로 오늘의 우리나라 實情은, 教育政策 내지 施設上, 각기 그 公職(該當部署)에 就任하기 前까지는 原則的으로 關係文書의 原文 한 字도 모르고, 關聯遺物의 一片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傳統文化에 관한 施策과 輿論이 左右되고 그 最高最終의 方向設定과 資金(豫算)配分 및 執行과 그리고 最終의 是非判決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니 傳統文化의 傳承 및 閐揚의 虛相을 可謂 짐작할 만하다. 이리하여 크게는 傳統文化政策의 方向設定과 그 事業展開의 優先順位設定에서 本末顛倒의 錯誤를 적지아니 가져오고, 작게는 文化財의 復元과 改修가 도리어 破壞와 改惡으로 뒷결음질 하며, 具體的 施工과 工期短縮에서 어이없는 無理가 派生되기도 한다. 특히 急速한 產業化에 따른 文化財保護領域의 設定과 申告文化財의 보상금 支給 및 가까이 大學博物館에 대한 没理解와 그리고 文化行政 내지 文化事業의 推進에 있어서도 一般行政原則을 그대로 適用시키려는 硬直된 姿勢로 一貫함으로써 커다란 蹤蹕을 빚는 事例가 非一非再하다.

傳統文化의 傳承과 閐揚에 있어서도 그 最高 最終의 責任者요 判決者요 執行者인 公職者社會에 있어서의 傳統文化에 대한 이같은 没理解와 無關心과 硬直된 姿勢는 크게 憂慮되는 實情이다. 傳聞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盛行되는 大單位의 建設時 行해지는 水沒地區 遺跡調查(發掘)에 있어, 滋水時期, 바꾸어 말해 遺跡調查時限을 一方의으로 設定함은勿論, 눈꼽만한 調查費마저 豫算項目上 「建设障礙物除去費」條로 計上한다고 하니 可히 그 정도를 짐작할만 한다.

大學에서의 博物館의 存在價值는 歷史 考古 등 專攻學徒들에게는 어차피 歷史(遺物·遺跡)現場에 나아가 직접 實習 體驗하여야 하는만큼 차라리 副次의이다. 오히려 傳統文化政策의 큰 태두리 設定과 그 執行을 擔當할 上記 豫備公職者 및 輿論擔當者들을 위해서 보다 切實히 要求되어야 한다. 最少限 4年制大學生 중에서도 특히 將次의 政治 내지 言論志望生이나 各種 考試準備生에게는 博物館에서의 實物을 통한 傳統文化教育이, 그 保存과 閐揚方法에 대한 것까지도 包含해서, 體系적으로 하루속히 實施되어야 한다. 우리는 公職者들의 没理解와 無關心을 탓하기 以前에, 學窓時節에 미리 그들을 가르키고 啓蒙하는데 먼저 努力하고 最善을 다해야 한다. ‘天賦的 才質’ ‘特別한 趣向’의 경우도 없지 않지만 무릇 사람이란 그 무엇이든지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歷史·考古·美術 등 이 方面의 專攻者로 自處하는 우리들 역시 그 動機와 經緯이야 어찌하였든, 이 方面을 배우고 보고 經驗하였을 뿐더러 지금도 더 보고 배우고 經驗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만치라도, 지금 公職者들의 没理解와 無關心을 탓하고 나무랄만한 知識과 眼目과 經驗과 技術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4年制 全大學生에게는 하루속히 1學點 以上 博物館에서의 直觀을 통한 傳統文化教育이 必須의으로 課해져야만 비로소 을바르고 真正한 民族文化傳統의 啓發과 傳承과 閐揚이 이루어질 것으로 筆者는 確信하고 있다.

III. 大學博物館 教育機能의 不實과 그 活性化

以上에서 論述한 바와 같은 民族傳統文化의 傳承과 閐揚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不實과 여러 難題는 그것이 크게 政策(行政)當局의, 즉 公職者들의 이 方面에 대한 没理解 내지 硬直으로 말미암았다고 하겠지만(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大學博物館에 대한 올바른 施策樹立을 呼訴해야 하는 바와 같이), 이는 들이켜 생각해보면 오늘의 公職者로 하여금 이같은 没理解와 無關心과 硬直을 갖게 한 根因은 바로 그間 大學博物館 運營에 從事한 우리들의 責任으로 둘려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式의 어려운 課題이나, 무릇 ‘反求諸己’를 第一로 삼아야 하는 學者 내지 先驅者로서의 基本態度에서 우리들이 먼저 그 責任을 甘受하고 深刻하게 反省해야 할 터이다. 率直히 말해 그間 우리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같은 没理解와 硬直을 갖게끔 放置해 두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그間 우리 大學博物館에 있어서의 教育的 機能의 不實現況에 대해서는 上記한 바 「古文化」第17·21輯 收錄의 安承周教授外 諸氏의 論及과 그間 本人이 겪고 느낀 여러 事實들을 감안해 具體의으로 살펴 보고자 하거니와, 이에 앞서 그間 우리 大學博物館協會에서 行한 事業, 그 중에서도 특히 年例(定期) 學術發表會의 內容을 아래에 紹介하여 이 언저리의 理解를 보다 복돋우고자 한다. 즉 計 25회, 57人의 主題發表가 있었으나, 한결같이 歷史 내지 考古 美術關係의 一般 學術發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個別的研究가 대부분이고, 이外 遺物의 整理와 保管 및 處理등에 관한 博物館運營一般論이 몇편 있을 따름이다. 大學博物館의 教育機能을 活性化하기 위한 方向模索과 努力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實情은 機關誌「古文化」에 收錄된 論文이나 資料題目을 통해서 보다 分明히 알 수 있다. 總 99篇(論文 71篇, 資料 28篇)에 이르는 個別題目을 提示하면 아래와 같은 바 그 內容과 傾向이 前者와 大同小異 함을 一目에 알 수 있다(「聯合展示一覽」과 「歷代任員一覽」은 여기에 직접 關聯없으나, 25周年을 紀念하는 자리인만큼 參考삼아 함께 收錄하였다).

〈表 2〉

學術發表會 一覽

회수	년 월 일	장 소	강연자 및 강연제목
1	1967. 6. 13	全南大	李弘植: 百濟의 古代國家成立問題 秦弘燮: 皇龍寺址舍利孔의 調查 黃壽永: 新羅文武王陵의 調查 *李弘植: 百濟斗西海 *黃壽永: 新羅東海의 遺蹟 *秦弘燮: 慶州新羅木塔址에 대하여
2	1968. 5. 18	建國大	金良善: 韓國磨製石劍의 形式分類에 대하여 鄭永鑄: 襄陽陳田寺址에 대하여 一石造物을 中心으로
3	1969. 5. 20	釜山大	金良善: 韓國古玉 및 古유리에 關하여 金廷鶴: 伽耶史研究의 課題 孫寶基: 韓國舊石器文化에 關하여

4	1970. 5. 28	崇 實 大	孫 寶 基 : 韓國初發見의 舊石器時代 집자리 秦 弘 變 : 慶州仁旺里地下遺構의 調查
5	1971. 5. 24	慶 煦 大	黃壽 永 : 斷石山 神仙寺의 調查 鄭永 鎭 : 沃川地區古蹟調查略報 崔淳 雨 : 朝鮮時代土人畫家 *李蘭 映 : 博物館學의 2, 3問題 *張仁 基 : 文化財法解說
6	1972. 5. 30	慶 北 大	*李泰 寧 : 文化財의 科學的保存에 관하여 全相 運 : 韓國科學과 技術
7	1973. 5. 7	梨 花 女 大	*金正 基 : 佛國寺의 復原의 考察 金裕 善 : 木造工藝品保有의 保有問題
8	1974. 5. 25	高 麗 大	李龜 烈 : 大學博物館과 現代美術 黃龍 渾 : 빗살무늬文化의 打製石器製作技術과 乙類型分類
9	1975. 6. 2	弘 益 大	安輝 濬 : 韓國山水畫의 發達 李蘭 映 : 博物館法制定에 關하여
10	1976. 6. 19	公 州 教 大	朴容 填 : 百濟蓮花紋瓦當의 形式分類 安承 周 : 百濟古墳의 編年 研究
11	1977. 5. 21	東 亞 大	金東 鎮 : 昌寧桂城古墳發掘報告 孫寶 基 : 桶瓦洞窟發掘報告
12	1978. 6. 17	圓 光 大	鄭明 鎮 : 益山王宮里宮牆址發掘調查 秦弘 變 : 异型石塔의 基壇形式
13	1979. 5. 19	慶 煦 大	李慶 成 : 韓國近代東洋畫에 關하여 鄭永 鎮 : 中原地區三國期遺跡의 調查
14	1980. 11. 22	東 國 大	趙由 典 : 感恩寺址發掘報告 黃壽 永 : 金銅佛象의 新例
15	1981. 6. 13	全 北 大	尹德 香 : 薦勤寺址發掘中間報告 鄭求 福 : 萬福寺址發掘調查報告
16	1982. 6. 5	嶺 南 大	尹容 鎮 : 伽耶土器의 概念 鄭永 和 : 安東文化圈地表調查報告
17	1982. 11. 19	濟 州 大	秦弘 變 : 韓國大學博物館의 回顧와 展望 尹世 英 :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
18	1983. 5. 13	東 國 大(慶州)	安承 周 : 韓國大學博物館의 現況과 問題點 李安 相洙 : 文化財 科學的保存處理의 實際 安均 均 : 紙類 織維質遺物의 科學的保存
19	1983. 11. 4	忠 北 大	차용동 결 :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의 성격 김우 : 임란전후의 복식
20	1984. 5. 11	關 東 大	方黃 仁 : 媽山寺에 대하여 黃東龍 淳 : 海外의 文化財保護法
21	1984. 10. 26	國 民 大	鄭許 鎮 : 國內의 文化財保護 許道 : 韓國 傳統武器 概觀
22	1985. 5. 17	延 世 大	任昌蘭 淳 : 韓國金石學과 銘文 李淳 映 : 博物館 운영과 이용
23	1895. 10. 18	木 浦 大	崔夢龍 龍 : 全南考古學의 어제와 오늘 秦弘良 變 : 獅子石塔과 獅子石燈 鄭謨 謨 : 西南海岸의 窯址 및 陶磁器
24	1986. 5. 30	江 原 大	崔福輝 奎 : 江原先史文化의 起源 崔安 潤 : 朝鮮時代繪畫의 變遷
25	1986. 10. 17	慶 南 大	朴鍾壽 大 : 慶南海岸의 水軍營鎮址 黃永 潤 : 三國時代의 金石文資料

*표는 實務者 세미나 發表

〈表 3〉

「古文化」論稿 一覽

	(論文)	(資料)		
1輯	高麗 板本에 對하여 再考量 要하는 磨製 石劍의 形式 分類外 祖形 考定의 問題 廣州 明逸里 住居地 發掘 略報告	金斗鍾 金良善 金廷鶴	高麗 白磁 染山 內院寺 所藏 大安七年銘 高麗 禁口에 對하여 法水寺址와 遺物 瑞山 大山里 出土 石鏃	蔣奎緒 丁仲煥 尹容鎮 李殷昌
2輯	璣璣玉衡(天文時計)에 對하여 廣州 可樂里 先史住居址 發掘報告 玄琴考	全相運 金廷鶴 趙成		
3輯	平壤 平川里 出土 金銅半跏思惟像의 造成年代에 關하여 三國 및 統一新羅의 天文儀器 양태 및 火工藝 新羅 馬形文 土器 —馬形文의 起源的 考察—	金良善 全相運 李杜鉉·鄭尙坤 丁仲煥	瑞山 仁旨面 先史遺跡 調查報告 —特히 支石墓를 中心으로 —	李殷昌
4輯	李朝初期의 地理學斗 地圖 農所里貝塚의 發掘調查概報	全相運 金龍基	釜山地方의 貝塚 岩寺里 櫛文土器遺蹟出土異形石器 우리服飾史上에서 본 守門將服에 對한 小考 樂浪有足銅盤	金東鎬 林炳泰 朴鎮柱 金廷鶴
5, 6輯	琴湖江流域의 先史遺蹟研究 儲承殿重修工事와 畫員 金明國 法水寺의 마하비로자나 三尊佛 韓國의 銮棺解釋에 對한 一小考 東海岸地方 巫俗	尹容鎮 申榮勲 文明大 金貞培 金泰坤	李朝前期의 白磁胎缸 聖居山晚日寺 調查報告 謙齋의 清風溪圖와 蘇山의 墨竹	李弘植 李殷昌 李圭皓
7輯	甲午改革以後의 黲章制度에 對하여 정읍 김동수씨 집	李康七 김광언	心田 安中植作 蘆雁圖	李慶成
8輯	李朝佛畫의 研究 I 幀畫篇上(1) 古代漆器研究總論	金玲珠 金鍾太	鬼面瓦와 막새瓦 數例	鄭永鎬
9輯	李朝佛畫의 研究 I 幀畫篇上(2)	金玲球	韓國 先史·原史遺蹟出土漁具例(1)	崔夢龍
10輯	李朝佛畫의 研究 I 幀畫篇上(3)	金玲珠	金海會峴里貝塚出土 硬質土製品에 對하여	崔夢龍
11輯	御眞圖寫에 關한 承政院 日記抄	李康七	韓國 先史·原史遺蹟出土漁具例(2)	崔夢龍
12輯	雙谿寺 貞鑑禪師 大空塔의 推定	鄭永鎬	韓國 先史·原史遺蹟 出土 漁具例(3)	崔夢龍
13輯	皇族用 补에 對한 小考 朝鮮朝 最後의 圖畫署員 —小琳 趙錫晉 論—	李康七 李慶成 李潭周	公州 甲寺所藏 月印釋譜 第二十一板木 發見調查 全南大 博物館所藏品 三例	朴容填 崔夢龍
14輯	漢畫外 漢代의 社會生活 中國 敦煌 千佛洞 達城 道鶴洞 石造浮屠	何浩天·成元慶譯 陳國寧·楊人從譯 鄭永鎬		
15輯	新羅關門城에 대한 小考 全南地方所在의 李朝墓誌 亞細亞 太平洋地域 博物館 研討會議 略報 한국선사예술의 한 유형	鄭永鎬 崔永龍 李康七		
16輯			全州市立博物館所藏朝鮮墓誌數例(其四)	崔夢龍

		— 얼굴 조각품을 중심으로 —	李隆助
		安岳 3號墳 被葬者논쟁에 대하여	
		— 多壽墓說과 美川王陵說을 centre으로 —	金貞培
17輯		韓國青銅器文化의起源에 관한 小考 <博物館問題>	金貞培
		대한박물관과 박물관협회, 어제와 오늘 박물관 학제원에 대하여	손보기 권재순
18輯		魯英筆阿彌陀九尊圖 웃면 佛畫의 再檢討	文明大
		謙齋 鄭歡의 “金剛全圖”考察	俞俊英
		朝鮮末期畫員 安健榮의 繪畫	洪善杓
19博		南原萬福寺址 第1次發掘略報	鄭求福
		Smithsonian Institution의 博物館教育	李鐘哲
		感恩寺址 發掘調查概要	趙由典
		渤海海上京龍泉府遺址	崔茂蔵譯
20輯		高麗 및 朝鮮王朝의 文人契會外 契會圖	莊子島의 先史遺蹟 — 全南 西南海岸 一帶의 考古學的 調查研究 — (3)
		朝鮮 孝宗朝 羅禪征伐斗 彼我 烏銃에 對한 小考	崔夢龍
			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 青銅遺物新例 沈泰謹 · 鄭聖喜
			石村洞西號墳 暨 住居址出土 百濟土器類
			裴基同
21韓		〈韓國大學博物館 發展을 위한 協議會〉 特輯「古文化」의 增刊에 붙여	安輝濬
		〈韓國大學博物館 發展을 위한 協議會〉 開催에 즈음하여	安輝濬
		韓國大學博物館의 回顧와 展望	秦弘燮
		韓國大學博物館의 現況과 問題點	安承周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	尹世英
22輯		〈樹默 秦弘燮館長 停年退任記念 特輯〉 全谷里出土 주먹도끼류石器의 性格에 對하여	史記 朝鮮列傳 英譯
		山清 默谷里出土 磨製石劍에 대한 考察	崔夢龍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的 樣式) 佛像의 成立과 展開	
		文化財 科學의 保存處理의 實際	李相洙
		紙類 纖維質遺物의 科學의 保存	安喜均
23輯		全谷里 發掘調查 — S ₁ W ₂ , TR · E ₁ W ₀ 區를 中心으로 —	裴基同
		論山 皇華山城考	鄭永和
		洪城 · 八卦里 풀무학원 所藏遺物 數例	洪再善
24輯		高麗時代의 線刻阿彌陀石板佛에 對하여	崔夢龍 · 秋淵植 '86 · '88文化을 봅니 大學博物館特別公開展示計劃案
			許善道

25輯	崛山寺에 대한 研究와 展望	方東仁	博物館資料目錄 編成에 대한 理論과 實際	張明洙
	驪州 欣岩里土器의 科學的 分析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研究(6)——			
26輯	崔夢龍·朴洋震 朝鮮時代 墓誌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研究	崔虎林		
	驪州 欣岩里 先史聚落址出土 石器類 II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研究(8)——			
27輯	崔夢龍·朴淳發 海外의 文化財保護法	黃龍渾	博物館의 研究機能과 研究職	李蘭英
	博物館의 研究機能과 研究職	李蘭英		
	土器의 科學的 保存處理	李相洙		
	全谷里 舊石器遺蹟의 研究		韓國先史時代의 農耕과 農具의 發達에 관한 연구	이기길 길경택
	——地表石器量 中心으로——	이기길		
	韓國先史時代의 農耕과 農具의 發達에 관한 연구	길경택		
		71篇		28篇

〈表 4〉 聯合展示一覽

회수	기간	장소	참가교 및 출품점수
1	1963. 4. 20~5. 4	梨花女大	建國大외 6교 144점
2	1964. 5. 2~5. 16	高麗大	慶北大외 10교 182점
3	1965. 5. 26~6. 5	慶北大	高麗大외 11교 239점
4	1966. 5. 23~6. 11	梨花女大	成均館大외 11교 387점
5	1967. 6. 5~6. 14	全南大	東國大외 8교 248점
6	1968. 5. 15~5. 18	建國大	서울大외 8교 252점
7	1969. 5. 15~5. 20	釜山大	東亞大외 10교 351점
8	1970. 5. 18~5. 28	崇實大	檀國大외 20교 223점
9	1971. 5. 17~5. 24	慶熙大	慶熙大외 15교 157점
10	1972. 5. 24~5. 30	慶北大	釜山大외 14교 215점
11	1973. 5. 1~5. 7	梨花存大	公州師大외 16교 297점
12	1974. 5. 20~5. 25	高麗大	德成女大외 18교 330점
13	1975. 5. 26~6. 2	弘益大	公州教大외 18교 205점
14	1976. 6. 14~6. 19	公州教大	釜山大외 19교 299점
15	1977. 5. 16~5. 21	東亞大	淑明女大외 21교 295점
16	1978. 6. 12~6. 17	圓光大	崇實大외 23교
17	1979. 5. 14~5. 19	慶熙大	同德女大외 22교
18	1981. 6. 8~6. 13	全北大	延世大외 20교 343점
19	1982. 5. 31~6. 5	嶺南大	弘益大외 20교 264점
20	1983. 5. 9~5. 14	東國大	全南大외 23교
21	1984. 5. 7~5. 12	關東大	圓光大외 22교
22	1985. 5. 6~5. 18	延世大	關東大외 26교 264점
23	1986. 5. 26~5. 31	江原大	陸士외 23교 212점

〈表 5〉

歷代任員一覽

순위	기 간	회장교	부회장교	감사교	간 사	교
1	1961. 5~62. 8. 6	梨花女大 沈亨求				
	1962. 8. 6~63. 5. 4	高麗大 金廷鶴	(1962. 8. 6 沈亨求)		館長逝去)	
2	1963. 5. 4~65. 6. 5	高麗大 金廷鶴	서울大, 建國大, 慶北大, 成均館大, 崇實大, 梨花女大	慶北大		
3	1965. 6. 5~67. 6. 14	高麗大 李弘植	建國大, 慶北大, 成均館大, 首都女師大, 崇實大, 延世大, 梨花女大, 全南大	慶北大 首都女師大		
4	1967. 6. 14~69. 5. 20	梨花女大 秦弘燮	建國大, 慶北大, 成均館大, 首都女師大, 崇實大, 延世大, 全南大,	慶北大 首都女師大		
5	1969. 5. 20~70. 11. 27	崇實大 金良善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嶺南大 慶北大		
	(1970. 11. 27~71. 5. 27)	梨花女大 秦弘燮	善館長逝去)	(1970. 10. 11 金良善)		
6	1971. 5. 27~73. 5. 7	梨花女大 秦弘燮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嶺南大 慶北大		
7	1973. 5. 7~75. 6. 2	建國大 金錫淳	慶北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淑明女大, 弘益大, 圓光大, 梨花女大	圓光大 慶北大		
8	1975. 6. 2~77. 5. 21	建國大 金錫淳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檀國大, 東國大, 서울大, 延世大, 梨花女大, 弘益大	慶北大 檀國大		
9	1977. 5. 21~79. 5. 14	東國大 黃壽永	建國大, 慶熙大, 慶北大, 高麗大, 公州教大, 檀國大, 東亞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嶺南大 公州教大		
10	1979. 5. 14~81. 6. 13	東國大 黃壽永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檀國大, 東亞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釜山大 公州教大		
		安啓賢				
11	1981. 6. 13~83. 5. 13	弘益大 李慶成	建國大, 國民大, 檀國大, 公州師大, 崇實大, 延世大, 東國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北大	嶺南大 公州師大		
		安輝濬				
		國民大				
		許善道				
12	1983. 5. 13~85. 5. 17	國民大 許善道	建國大, 慶熙大, 東國大, 서울大, 崇實大, 延世大, 梨花女大	檀國大 嶺南大		
13	1985. 5. 17~ 현 재	國民大 許善道	東國大, 서울大, 崇實大, 延世大, 梨花女大, 仁荷大	慶熙大 全南大		
		公州師大				
		曉星女大				
		關東大				

이外 그間 協會에서 對外的으로 態度를 表明 내지 議論한 바가 非常에 있으나 그內容 또한 德壽宮美術館併合問題(1964. 8. 26), 慶州石塔舍利莊嚴具盜取事件(1967. 9. 13), 博物館法制定(1978. 6. 26), 大學博物館協會機能發揮(遺物購入·發掘調查, 1971. 5~7月) 등 一般文化政策에 관한 것이고, 特別히 大學博物館의 教育機能強化를 위한 模索은 없었다.¹¹⁾ 또 協會次元에서 大學博物館 내지 大學博物館協會의 發展方向을 模索한 세 분의 提案 역시 다음과 같은바 각별히 教育機能의 強化에 그 重點이 높

11) 古文化 第21輯 pp. 15~16 參照

여져 있는것 같지는 않다. 一(孫寶基館長) 1. ① 展示 ② 研究를 위한 整理 ③ 調査・研究・發掘 ④ 保存處理・復元問題 ⑤ 博物館講演會. 2. ① 聯合展示 年 2回開催 ② 聯合展示品目錄 및 說明書刊行 ③ 「古文化」增刊 및 內容補強 ④ 國內外 關係機關(例 ICOM)과의 圖書資料交換 ⑤ 會員校實態調查 ⑥ 協會內 分科委員會(例 時代別 分野別)設置 ⑦ 政府의 文化政策(博物館法制定)參與. 二(秦弘燮館長) 1. ① 收藏遺物의 管理徹底 ② 陳列을 통한 學生觀覽增進 ③ 教育目的에 副應한 遺物收藏 ④ 對外活動의 教育的 活用 ⑤ 協會校 組帶強化. 2. ① 「古文化」의 充實化와 協會報新刊 ② 聯合展示 積極參與와 그 效果的 運營 ③ 自然系博物館의 協會加入推進 ④ ICOM 또는 ICOMS 加入推進. 三(安承周館長) ① 博物館長 補任의 慎重 ② 專任研究員(學藝員)確保 ③ 博物館建物과 施設의 大幅改善 ④ 學術的機能과 教育的 機能提高 ⑤ 博物館施設의 4年制 全大學擴充 ⑥ 大學博物館에 대한 當局의 支援強化¹²⁾

以上과 같은過去의 實情을 깊이 감안하면서 大學博物館에 있어서의 教育的 機能 및 使命의 不實과 그 活性화는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側面에서 오늘날 冷靜 嚴酷하게 檢討 批判되고, 積極 迅速하게 反省 促求되어야 한다.

첫째 收藏品 內容이 綜合的 一般的 基礎的 教育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考古 歷史 美術 등 全分野 全時代 全種目の 것을 可能한限, 널리 蒐集 收藏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一般博物館과 對比해 大學博物館의 特性은 그 機能上에서 教育博物館이고, 收藏品內容上에서 綜合博物館일 터이다. 다음의 指摘과 方向提示는 여기서 크게 留意해야 할 바로 믿는다.

대학박물관의 소장품의 내용은 교육목적에 부응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혹 일급유물 수집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학교의 선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동기가 되었다면, 대학박물관의 존재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사실 대학을 찾는 학교의 손님들, 특히 외국손님들에게 박물관을 보인다는 일은 그 자체를 흥사를 일으키지만, 그러한 일이 주가 되어 그러한 목적으로 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목적에 부응되도록 진열품을 모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소장품은 많은 전공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대학에서 서로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고루 만족할만히 다양해야 되겠고, 학교 경영자의 개인기호가 작용하여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된다든지 지나치게 우수한 것만을 수장하려는 일은 배제되어야 하겠다. 아무리 상품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연구에 귀중한 참고가 될 경우에는 마땅히 대학박물관으로서는 확보하는 배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¹³⁾

大學博物館의 收藏品內容, 바꾸어 말해 大學博物館의 運營方向과 관연해서는, 오늘날 그 많은 種類의 關係遺物을 모두 蒐集 展示한다는 것이 絶對的으로 不可能하고, 또 例컨대 特定宗教의 普及을 目的으로 하는 大學이나, 社會・文化・知識의 細分化에 따라 農業・水產業・體育・女性 등 特殊目的의 學校가 늘어나는 趨勢에 맞추어, 各大學마다 綜合博物館이 아닌 特殊 또는 專門博物館의 性格의 大學博物館 運營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이 一部에서 상당히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더우기 이 같은必要와 當爲性으로 私立大學의 경우 그 대학 教育理念의反映과 伸張이 指摘되고, 심지어는 各大學博物館長의 專攻과 趣向의 活用이 舉論되기도 한다.¹⁴⁾

그러나 이같은 主張과 方向이 심히 不當함은勿論이다. 즉 博物館長 내지 經營者의 趣向云云은

12) 古文化 第17輯 pp. 27~33 및 第21輯 pp. 17~19와 pp. 34~35 參照

13) 古文化 第21輯 p. 18 參照

14) 古文化 第21輯 p. 44 參照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宗教 등 特定 建學理念이나 農業 등 特殊 產業目的의 大學에서도 博物館이 위와같이 運營되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例컨대 東國大學校에서 修學하는 學生이 그 모두 佛教專攻의 學生이 아님은 周知의 事實이고, 나아가 그中 佛教專攻의 學徒들 또한 그 方面의 옛 佛教文化에 관한 素養을 남달리 갖추기 以前에, 그들 역시 우리 民族의 一員으로 태어난 以上, 우리 傳統文化 全般에 대해 一定水準의 普遍的 基礎的 素養을 必히 쌓아야 하며, 그리하여 民族文化를 守護 傳承 閐揚하는 最少限의 基本權利와 義務를 享有 遂行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說明하면 흔히 梨大·淑大·德成大 등에서는 主로 女性關係文化財의 專門博物館을, 濟州大·忠南大·慶尙大 등에서는 耽羅·百濟·伽倻文化관계의, 成均館大·東國大·崇田大 등에서는 儒教·佛教·基督教 관계의, 陸士·海士·空士 등에서는 軍事關係의, 그리고 工大·農大·水產大 등에서는 工學·農業·水產業관계 專門의 特殊博物館의 設置와 運營이 바람직하다고 主張된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를一一히 들어 論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濟州大·忠南大·慶尙大 出身이 將次 耽羅·百濟·伽倻관계 文化財에만 부딪치고, 그것에만 關心을 가지면 足하다는 保障이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오늘날 女大出身의 女性들이 文化財部面에서도 女性관계만이 아닌 온갖 것에 직접 부딪치고, 크게 活動하고 있으며, 다시 陸·海·空 三士出身이豫編後 政界·官界·經濟界·學界·外交界 등 모든 部面에 널리 進出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目睹하는 바와 같기 때문이다. 女大 또는 三士出身이 平生 女性 내지 軍事關係以外의 傳統文化財에는 接하거나 關與해서는 안된다는 現實과 鐵則은 東西古今 어디에서도 일찍이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筆者가 힘주어 말하는 바는 각 大學에서 博物館長이나 經營主의 專攻과 趣向, 그리고 特定建學理念 또는 特殊教育內容에 비추어 이에 알맞는 特殊博物館의 設立과 運營이 無條件 不當하다는 主張이 決코 아니다. 다만 이로써, 즉 特殊博物館의 設立으로써 각 大學이 지녀야 할, 다시 말해 共通으로 必히 갖추어야 할 一般 綜合 教育博物館으로서의 機能과 使命을 犯牲시켜서는 아니됨을 크게 強調할 따름이다. 一般 綜合 教育博物館으로서의 機能과 使命을 完遂하는 위에, 이에 더하여 각각 그 大學의 與件과 理念에 맞추어 特色 있는 專門博物館의 設立과 運營은 그 아무리 勸獎되어도 남음이 없다.

각 大學單位 專門博物館運營의 基本構想은 根本的으로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使命이 第一次的으로 모든 一般大學生에게 傳統文化를 널리 教育 傳承시키는데 있음을 忘却하고, 그것이 크게는 國家次元, 적체는 各分野單位로 傳統文化財의 保存과 그 研究에 있다는, 즉 그 文化的 學術的 機能이 第一次의이라고 잘못 認識한데서 말미암은 그릇된 發想이다.各大學 博物館의 收藏品內容이 一次的으로 基礎的 綜合的 教育의어야 함은各大學 圖書館의 藏書內容이 一定 限度內에서는 다 같아야하고, 또 必須教養國語와 教養國史의 教科書內容이 어느 大學, 어느 學科에서도 大同小異해야 하는 바와 같다. 教養必須國語나 國史 그리고 一般物理나 化學의 教課內容을 각 大學마다 特殊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一般的 基礎的 必須的 教課內容 등을 他大學에 가서 受講하라는 主唱이나 現實은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

그러므로豫算의 不足이나 遺物의 缺乏 등으로 適宜한 實物을 各分野別로 풀고루 求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基礎種目 정도는多少 未洽한 物品이거나 심지어 模造品으로라도 우선 代置해 두는 方

向과 努力이 模索 講究되어야 한다.

여기서 必히 弊불여 두어야 할 바는 우선 韓國傳統文化의 理解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相互對比하여 더욱 確實해지며, 또 오늘의 우리 後世들이 특히 西歐文物에 대한 學習에 크게 功들이고 있고, 다시 이들이 卒業後 世界各地로 活潑히 進出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大學博物館에서는 앞으로 비단 우리의 傳統文物만이 아니고 널리 世界의 그것도 收藏 展示하는데 努力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와 우리 後孫들의 眼目과 知見은 좁게 國史나 民族傳統文化財에만 局限되지 말고, 하루속히 널리 世界的 國際的 次元으로 擴充되어야 한다. 恒時 太平洋으로의 南下進出을 劃策하는 蘇聯이 帝政 러시아 以來 꾸준히 우리 韓半島에 대해 莫大한 投資로 깊이 知見을 쌓은 바는(第2次世界大戰 終了時 美國의 그것은 이와 거의 正反對였다) 우리에게 좋은 他山之石이다. 보다 積極的으로 論한다면 오늘날 盛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海外進出 역시 반드시 그곳에 대해 充分한 事前 知識을 蓄積한 위에 行해져야만 所期의 成果를 能히 그리고 瞨蹠없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基本方向은 이미 緒論에서 밝힌 바 本協會 創立趣旨에도 分明히 提示되어 있다. 이 경우는 정녕 實物을 求한다함이 至難의 일일터이므로 世界各國의 文化 내지 文化財에 대한 寫眞과 그림을 蒐集 展示하는 정도로도 우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¹⁵⁾

이에 더하여 各大學博物館에서 露혀야 할 또 하나의 活動領域은 각기 그 大學의 紀念品을 蒐集·保存·整理事項을 展示하는 機能이다. 한마디로 「學校紀念品室」開設이라고 命名될 수 있는 活動이다. 이같은 運營과 活動을 통해 모든 學生들로 하여금 각기 自己 學校의 建學理念 내지 設立趣旨와 發展經緯 등을 皮膚로 느끼게 하여 愛校心과 自矜心을 복돋우게 될 것이다. 뿐더러 이를 통해 나아가 모든 歷史와 傳統文物의 形成과 그 傳承이 類別히 特別한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해 考古·歷史·美術 등의 專攻者들만이 아닌 그들各自, 즉 一般國民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參與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生生한 經驗과 認識을 갖게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 歷史編纂과 文化傳統의 傳承 現場에 그들(一般大衆)도 同參할 수 있고 同參해야 하는 實相과 使命을 똑바로 깨닫게 하는 보다 큰 教育的效能을 거둘 수 있을 터이다.

둘째, 大學博物館의 位置는 大學構內에서 學生들의 발길이 쉬이 닿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 施設中 第一次로 確保 擴充되어야 할 곳은 展示空間이다. 博物館에는 遺物을 保存하고, 整理하고, 調査하고, 研究하고, 展示하는 空間이 다같이 必須의으로 要求되지만, 大學博物館에 있어서는 그 機能의 本質上, 展示空間의 確保와 完備가 가장 優先되어야 한다. 그런데, 現在 우리들의 實情은 심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이다. 즉 1982年 後半의 統計이지만, 당시 設問(設問發送 48個校)에 應答한 42個會員校中 40%가 現在의 位置와 環境이 博物館으로서 適切치 못하다고 하였고, 74%가 建物面積의 不足을 指摘하였는데 그 順序는 陳列室 作業室 등이라 하였다. 다시 約 80%가 現在의 博物館建物은 처음부터 博物館으로서 建立된 것이 아니고, 講義室 등 一般用途로 建設되었던 것이라하니 이 方面에서의 大學博物館 改善의 時急牲은 火急한 정도이다.¹⁶⁾

15) 古文化 第17輯 pp. 31~32 參照.

16) 古文化 第22輯 pp. 24~25 參照.

세째, 遺物의 公開觀覽活動, 다시 말해서 學生들에 대한 直接 教育活動의 不振이 곧바로 改善되어야 한다. 이 部面活動이 심히 不足하고 不實하다함은 이미 緒論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역시 上記 統計에 의하면 20% 이상의 會員校가 당시까지 博物館을 아예 公開하지 않거나, 비록 公開한다고해도 公式 開館日이 없고 觀覽要請이 있는 경우만 隨時로 公開한다고 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設問에 不應答한 會員校가 거의 이에 該當할 터이니 實際 非公開 比重은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統計는 당시까지 全國에서 公開되고 있던 大學博物館의 數는 모두 合쳐도 40 안팎에 不過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現在 近 100에 이르는 4年制大學에서 조차 그나마 博物館을 觀覽할 수 있는 大學은 그 折半에도 못미친다는 結論이니 실로 寒心한 實情이 아닐 수 없다. (p. 28 參照)

역시 上記 統計에 따르면, 1981년 1年間의 36個 大學博物館의 觀覽人員 總計는 277,507名으로 1個 校 平均이 7,709名에 不過한 底調한 實績이다. 이를 36個大學 在籍總學生數와 1個校 平均 在籍生數에 對比해 볼 必要가 있는 위에, 위의 數字는 대부분이 歷史 考古 美術專攻의 學徒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事實을 直視해야 한다. 더우기 上記 觀覽人員中 他大學 혹은 一般人이 近 半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만약 大學博物館이 단순히 學內機關으로서 그치지 않고, 對外的으로 크게 利用되고 있는鼓舞的 現象이라고 握하는 大學博物館 從事者가 있다면, 이는 실로 主客顛倒의 錯覺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크게 警告하지 않을 수 없다. 大學博物館은 第一次的으로 學內의 모든 學生에게 그 教育使命을 完遂해야 하는 바이므로, 그것을 完遂하지 못한 狀態에서의 對外效果는 大學博物館으로서 無意味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하나 크게 注目할 바는 各大學博物館에서 專任要員인 學藝職의 不足을 指摘하고, 그 補任을 热望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 역시 大學博物館을 단순한 民族傳統文化財의 保管倉庫정도로 認識하는 大學當局의 沒理解에서 起因하는 바, 이에 더하여 博物館長職 역시 一般大學補職의 하나로 看做하여 專攻에 대한 別다른 配慮 없이, 無條件 週期의으로 交替 任命하는 傾向에 있으니, 이러고도 그 어찌 올바른 公開展示, 즉 教育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흔히 大學施設中 圖書館과 博物館이 그 機能과 任務面에서 나란히 舉論되기 쉬우나, 圖書館은 原則的으로 學生들의 自進要請에 의해 正確 迅速하게 그들이 願하는 教育資料를 提供하는데 反해, 博物館은 館長과 學藝員의 教育目標(意志)와 眼目에 의해 그들에게 알맞는 資料를 골라서 提供해야 하는, 보다 能動的 教育機關인 것이다. 圖書館資料(文獻)에는 그 自體에 반드시 說明이 있으나, 博物館資料(遺物)에는 대개의 경우 그 自體에 아무런 說明이 없다.

네째, 大學博物館의 展示에 있어서는 되도록 많은 說明文과 案內圖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大學博物館의 展示에 있어서 아무런 說明과 案내가 없는 것은 教室에서 教授가 教材만 提示해 놓고 講義를 하지 않는 바와 같다. 각 遺物의 內容과 價值에 대한 說明뿐만 아니라, 이를 製作하는 技法이라든가 使用하는 用途 등에까지 미쳐야 하고, 이는 可能하다면 音盤施設을 갖추어, 必要할 때 學生들이 언제나 들을 수 있게 해야 바람직하다. 다시 鑑識觀과 保存能力을 기르기 위해서 模造品과 修理事品을 함께 陳列하고, 그 核心과 留意點 등을 特別히 強調 說明하는 企圖도 廸獎되어야 한다.

이外, 收藏品의 目錄과 收藏品 寫眞의 슬라이드를 作成 備置하여 學生의 要求에 應하고, 各種의

案內(說明)文과 圖錄을 刊行 普及하여 關心을 널리 불러 일으켜야 한다. 한편 定期 혹은 不定期의 으로 特別展示와 企劃展示, 그리고 博物館關係의 教養講座와 招請講演會를 開催하며, 나아가 文化映畫를 上映하는 등, 百方으로 學生들에 대한 教育活動을 展開하여야만 한다. 大學博物館은 決코 앉아서 學生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오도록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도 過去는 勿論 現在에도 이 方面의 努力과 實績이 심히 未備하고 不充分하니 매우 안타깝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展示室의 雰圍氣를 보다 安樂 調和있게 하고, 展示室 안팎에 온갖 便宜施設을 갖춤으로써 學生들로 하여금 餘暇善用과 休息處로도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 歐美諸國의 博物館에서 遺物을 公開展示하는 目的이 一般公衆에 대한 教育과 慰樂에 도움주기 위한 것이라는 概念(國際博物館協會 博物館定義 參照)이 있는 바와도 符合하는 方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는 博物館이 重要文化財의 收藏處임을 내세워 保安上 이를 심히 껴리는 傾向도 없지 않다. 하지만 만약 大學博物館에서 收藏遺物의 保安을 第一義로 내세워 學生들의 觀覽誘致에 消極的이라면, 이는 이미 大學博物館의 基本機能과 使命을 錯覺하거나 忘却한해서 말미암은 잘못이다. 學生들의 발길을 멀리하는 博物館은 이미 大學의 博物館일 수 없다.

다섯째, 大學博物館의 對外活動도 最大限 教育的으로 活用되어야 한다. 大學博物館의 對外活動은 主로 資料·地表 및 發掘調查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도 學生들을 이에 積極 參與시킴으로써 그 教育效果를 올려야 한다. 이는 歷史·考古 등 이 方面의 專攻學徒에 대한 專門教育에 이바지하는 效果가 主이겠으나, 나아가 調查 내지 發掘直前에 特別講演會 開催나 슬라이드 上演 등을 통해서 그 調查나 發掘이 갖는 義意와 成果는 勿論, 이를 標本으로 삼아 國民一般이 遺物·遺蹟의 調查와 發掘에 대해서 지녀야할 基本素養 등을 一般學生들에게 널리 일깨워줄 수도 있다.

大學博物館에서 行하는 調查와 發掘이 民族的 國家的 次元에서 文化的 學術의으로 그 아무리 重要하고 좋은 成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過程에서 校內學生들에게 아무런 教育的 效能을 주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大學博物館의 基本機能과 使命에서는 距離가 면 것일 수 밖에 없다.

IV. 大學博物館의 教育機能과 法制上 現況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만치라도 大學博物館이 發展하게 된 것은(勿論 반드시 갖추어야 할 絶對相에 比하면 너무도 微微하지만) 무어니해도 檀紀 4288(西紀 1955)年 8月 大學設置基準令上에 大學에서의 博物館設置가 規定됨으로써, 바꾸어 말해 法制上의 뒷받침을 얻음으로써 크게 促進되었음이 分明하다. 그런데 不幸히도 1982年 12月未에 이르러 이 法制上의 根據가 갑자기 송두리째 없어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順坦치 않았던 여러가지 與件이 더욱 惡化되어, 大學博物館의 發展은 오늘날 크게 萎縮되고 혼들리고 있다. 하지만 大學博物館의 基本機能과 使命인 實物(直觀)을 통한 民族傳統文化敎育은, 上述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現實에서는 정녕 國家的 民族的 次元에서 時急하게 그리고 必須의 으로 促進되어야만 하는 重大課題이다. 그런만큼 이를 바로잡아 大學博物館의 全 大學에의 擴充과 그 機能의 活性화를 통한 民族傳統文化敎育의 正常화를 가져오는데 도움(資料)되고자 그 間의 經緯와

內容을 아래에 간단히 밝혀 두기로 한다.

이 땅에서의 大學博物館의 設置는 지금으로부터 50餘年前 日帝治下에 普成專門學校(現 高麗大, 1934年)와 梨花女子專門學校(梨花女大, 1935年)에서 비롯되었고(世界에서 大學博物館의 嘴矢는 1863年 大收藏家 Elias Ashmole의 遺物寄贈으로 開發된 英國 Oxford 大學의 Elias Ashmolean博物館이라 한다), 8·15解放을 거쳐, 6·25動亂을 겪은 後,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漸次 活潑해졌다. 日政年間의 大學博物館設置는 透澈한 民族意識의 發露에 힘입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8·15 以後의 그것은 새로이 많이 생겨난 大學經營者들의 民族文化財에 대한 愛護心과 重要文化財 收藏을 통한 校威宣揚意識 등에도 크게 말미암았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原動力은 民族傳統文化敎育에 있어서 直觀(實物)敎育의 중요성을 똑바로 看破한 당시의 政策當局, 즉 文敎部 關係要路의 炮眼에 바탕한 法制上의 践行과 行政的 嘉獎이었다. 즉 31年前 檀紀 4288年 8月 4日字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1063號)에 이 미

第10條(施設基準) 9. 博物館·科學館 其他의 附屬施設. 大學 또는 學科의 規模에 따라 適宜設置한다.

라 規定하여 모든 大學에서의 博物館設置를 法制化하였고, 이는 다시 1967年 9月 27日字로 改正된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3226號)에서

第11條 2. 綜合大學校에는 第8條 第2項의 規程에 의한 設備 이외에 다음의 基準에 의한 博物館·科學館과 其他 文敎部令으로 定하는 附屬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① 博物館은 學生 2,000人 未滿까지는 450평 방미터 以上, 2,000人 以上일 때는 600평 방미터 以上으로 할 것. (*單科大學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음)¹⁷⁾

이라는 内容으로 進一步하여 4年制 綜合大學校에서는 博物館設置가 義務化되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每學期 登錄金收納에 있어서도 學生 1人當 一定額의 「博物館費」를 徵收하도록 措置하여 行政的 次元에서도 大學博物館의 發展을 確固히 保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上記 1967年 9月 27日字 大學設置基準令에는 4年制 單科大學에 대해 言及이 없으므로, 單科大學에서의 博物館設置가 實際上 排除되게 되었고, 또 綜合大學校의 경우도 漠然히 博物館의 施設面積만 提示하였을 뿐, 收藏品과 學藝官 등 運營에 必要한 諸般事項이 全혀 規定되어 있지 않아서 그 實效에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이리하여 大學博物館에서는 특히 施設(建物)과 資料(遺物)와

17) 그러나 從前 이와 關聯해서는 1979年 5月에 發刊된 古文化 第17輯 p. 24와 p. 25에

• 문교부 교육기준령이 1967年 6월 17일 공포되었는데, 종합대학교는 200m² 이상의 박물관 전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뒤따라 1970年 1월 27일 대통령령 4543호〈대학설치기준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속에 대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제12조 1항에는 “학생 1,000명 미만까지는 450m² 이상, 2,000명 이상은 600m²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하고, 다시 1982年 12月에 發刊된 古文化 第21輯 p. 6에도 역시 같은 内容의記事가 收錄됨으로써, 이를 根據로一般的으로 大學博物館이 最初로 法制上에反映된 것은 1967年 6월 17일이고, 이를 이어 補強된 것은 1970年 1월 27일의 일로 한결같이 잘못 認識되어 왔다.

하지만 筆者が 下述하는 바와 같이 1984年 3月 이후에 이 관계를 綿密히 調査·檢討한 바로는 上記와 같이 그 最初는 檀紀 4288(1955) 8月 4日字의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1063號)이고, 補強은 西紀 1967年 9月 27日字의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3226號)인 것 같다(古文化 第24輯 p. 46 參照).

運營要員(學藝員)確保에 큰 어려움이恒時 뒤따르는데다가, 1970年後半에 접어들어서는 大學登錄金抑制施策의一環으로「博物館費」徵收項目이削除되어 더욱困境에 빠지게 되었다.

다시 1980年代에 이르러서는 大學生定員의 急激한 量的 肥大로 말미암아 大學經營의 重點이 우선 다급한 講義室擴充과 人件費確保 등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는 與件이 造成됨으로써, 大學博物館은 “重要하지만 당장 時急하지는 않다”는 大學行政當局의 그릇된 認識으로 인해 계속 踏步를 거듭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本協會에서는 1982年 11月 19日 「韓國大學博物館 發展을 위한 協議會(第17回 學術發表會)」를 開催하여 이 어려운 現實과 問題點[核心은 展示施設과 遺物收藏(豫算) 및 管理研究教育能力(특히 學藝員)의 確保難]을 짚어 分析 指摘하고 널리 呼訴 要請하였다(古文化 第21輯 參照).

그런데 어이없게도 바로 이 무렵에 政府(文教部)當局에서는 1982年 12月 31日字로 고쳐진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10983號)에서 大學博物館設置의 根據마저 一朝에 뿐리 채 削除해 버렸으니 다음과 같다.

第11條(附屬施設) 大學은 該當系列 또는 學科의 教育研究에 支障이 없도록 別表 3에 의한 附屬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別表 3에는 博物館이 舉示되어 있지 않음).

즉, 改正前의 大學設置基準令 第12條의 博物館設置 條項이 아예 없어지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11條 附屬施設을 例舉한 別表 3에도 博物館은 漏落되어 없어졌다.

이같은 事實을 1年 넘어 뒤늦게야 1984年 3月 以後, 文化公報部 要請으로 大學博物館의 86·88文化을 limp參加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비로소 알게된 우리 關係者一同들은, 이를 綿密히 檢討하는 過程에서 또한번 놀라움과 아쉬움을 禁치 못하였다. 즉 上記 大統領令 第10983號와 同日字로 改正된 國立學校設置令(大統領令 第11018號)에

第2章(大學校) —綜合大學校—

第9條(教務處) 2. 教務處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⑥ 附屬圖書館 및 附屬博物館을 管理

第11條(附屬施設) 1. 大學校에 다음의 附屬施設을 둔다.

- ① 圖書館
- ② 博物館

第3章(大學) —單科大學—

第21條(附屬施設)

* 單科大學에는 博物館이 漏落되어 없음.

라 하여 다음과 같은 4年制 大學이면서도 國立綜合大學校에만 博物館을 두게 하고, 私立綜合大學校와 國·私立을 莫論하고 單科大學에는 한결같이 博物館을 두지 않도록 規定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屢述한 바와 같이 民族傳統文化에 대한 實物(直觀)教育이 모든 大學生에게 必須의으로 時急히 要求되며, 그러므로 各大學마다 不可缺하게 絶對的으로 있어야 하는 大學博物館을 國立綜合大學校에만 두게 하고, 私立의 모든 大學과 비록 國立일지라도 單科大學에는 두지 않아도 좋다는 論理

와措置는 그 아무리深思熟考하여도 納得이 가지 않는다. 이는 文教當局에서 大學博物館의 基本機能과 使命을 차라리 文公部側에서 要求되는 民族文化財의 收藏處나 이에 대한 研究(學術調查) 내지 社會·文化的인 것으로 열핏錯覺하였거나, 아니면 大學博物館을 좁게 考古·歷史·美術 등의 專攻學徒만을 위한 實習場으로 잘못認識한바서 緣由한 誤判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一時的 事務錯誤로 밖에는 짐작되지 않는다. (1970年代後半에 들어서 登錄金收納에 있어 「圖書館費」徵收項目도 다 같이 없어졌다. 그러나 圖書館費 確保는 그後에도 아무런 動搖없이 持續되었는 바, 이는 너무나도 當然하고 多幸한 일이다. 現在는 文教部 示達「大學財政運營指針」으로 圖書購入費만도 學生 1人當 2萬원 以上을 必히 計上 配定하도록 強化되어 있다.)

이에 同年 4月 以後 文教部와 文公部 關係要路 및 나아가 國會 文公委員會까지도 往訪하면서 위와 같은 大學設置基準令의 改正이 심히 不當 不公正함을 說明하고, 하루속히 元來의 法制定趣旨를 옮바로 되살려 還元 補完해 주도록 계속 呼訴 要請하였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 그러나 이 過程에서 만나는 關係人士中 그 아무도 이같은 呼訴와 要請이 不合當 不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오늘에 이르도록 그 實現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本協會에서는 그間 第29回 總會에서 決議하여 1985年 10月 30日字로 다시 教育改革審議會에 이를 要請하는 建議書를 提出하기도 하였다.¹⁸⁾

18) 建議書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大學博物館의 大學設置基準令上 復活 建議

國家 教育改革政策審議의 막중한 大任을 맡고 勞心焦思하시는 貴下와 貴審議會의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드리며, 日益 健勝하기를 祝願합니다.

本協會는 大學博物館事業의 發展을 통해 大學教育의 充實과 民族文化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24년 전에 全國의 大學博物館이 聯合하여 構成 發展해 온 協議體(現會員校 57個校)입니다.

우리 會員一同은 大學博物館으로서는 거의 死活의 關鍵인 大學博物館의 大學設置基準令上 復活을 建議 呼訴하고자 합니다.

1. 韓國의 大學博物館은 普成專門學校를 嘴矢(1934年)로, 梨花女專(1935) 등에서 博物館을 設置하여 日帝下에서도 抹殺되어가는 民族文化의 脈을 이어왔고, 解放後에는 6·25動亂等 极심한 國家의 危難과 社會의 混亂期에 날로 散逸破損되고, 海外로 搬出되는 文化財를 收拾 保護하는데 크나큰 役割을 擔當하였습니다. 70년대 부터는 急變하는 社會風土와 日進하는 國土建設에 맞추어 全國坊坊谷谷에서 重要 文化遺跡과 遺物을 體系的으로 調查 發掘 研究하면서, 종래 우리나라 教育이 抽象的觀念的方法에 치우치던 弊害를 止揚하고, 實物(直觀)教育의 重要性을 일깨워 그 實效를 거두게 하는 基本使命의 遂行으로, 教育의 學術的 文化的 所任을 다해 왔습니다.

이같이 大學博物館이 크게 成果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간 關係要員들이 所信과 使命을 다했던 열심히努力한 結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政府에서 일찌기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을 깊이 認識하여 1955년 8월 4일 大學設置基準令上에 博物館 設置를 法制화하고, 1967년 9월 27일에 이르러 이를 다시 補強 改正(綜合大學에는 必히 博物館을 두되, 學生 2,000인 미만인 경우는 450m² 이상, 2,000인 이상인 경우는 600m² 이상으로)함과 아울러 學生 1人當 一定額數의 博物館費를 徵收토록 措置하여 法制的行政의 次元에서 大學博物館을 확고히 保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1982년 12월 31일 大學設置基準令을 改正하면서 느닷없이 그리고 大學博物館과는 아무런 通告나 說明도 없이 同基準令에서 博物館 關係條項을 完全 削除해버렸습니다(別添 大學博物館關係法規 其他參照).

이로 因하여 大學博物館은 一舉에 설 땅을 잃어버리는 不幸을 당하게 되었을 뿐더러, 이같은 政府次元의 심히 불리한 措置로 말미암아, 즉 있었던 것이 없어짐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보다도 百倍不利한 與件이造成됨으로써, 이는 곧 각 大學當局의 硬直된 行政運營에 그대로 반영되어, 大學博物館은 날로 本然의活動은 물론 그 存立마저도 威脅받는 實情에 이르렀습니다.

大學設置基準令上 博物館條項의 削除가 大學教育의 本領에 비추어 심히 不當하고 또 이같은 措置로 말미암은 一線 大學行政에서의 硬直의 實相에 대해서는 더 詳述함이 蛇足일 것 같아서 省略하고, 다만 이의復活을 위해 努力하는 過程에서 느낀 바 아래 두가지 事項만을 添記해 둡니다.

많은 鼓舞와 同調에도 不拘하고(上記 關係要路外 서울新聞에서는 1984. 12. 27日字¹⁹⁾로 그 間의 事情을 取

첫째는, 文教部·文公部·國會 등 어느 機關의 關係人^士도 大學博物館의 育成이 時急하며 重大하다는데 모두 意見을 같이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具體的 進陟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一部 人士간에는 大學博物館의 機能을 考古 美術 史學등 專攻教育을 위한 附屬施設로만 誤認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입니다.

오늘날 幼兒教育으로 부터 成人教育過程에 있어서까지 理論教育과 더불어 實物教育이 그 열마나 중요한 가는 새삼 더 論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大學에서 공부하는 어느 分野의 學徒에게도 우리 전統文化를 비롯한 人類文化 全般에 대한 實物教育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까닭에, 즉 全 大學生에게 우리 民族 및 人類文明 遺產에 대한 산 教育이 必須로 要求되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教育의 實情은 中高校過程에서는 博物館 施設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大學에서만은 博物館 設置가 必須不可缺하게 要求됩니다.

大學設置基準令上의 削除와 廉削하여 또 크게 注目되고 憂慮되는 바는 政策當局의 이같은 認識不足으로 말미암아 育成目的의 大韓民國「博物館法」制定(84. 12. 30)에서도 우리나라 全體博物館의 60% 이상을 占하고 있는 大學博物館이 文教部의 異見提起로 因해, 그 審議過程에서 완전히 削除되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大學博物館은 지금의 우리 國家次元에서는 保護와 育成은 커녕, 法制上 孤兒的 存在(大學設置基準令과 博物館法에서 공히 누락)로 전락되어 不幸한 處地에서 流浪하고 있습니다.

2. 이에 本協會는 이 불행한 現實을 打開하기 위해 1982년 11월 「韓國大學博物館發展을 위한 協議會」를 開催하여 이 어려운 現實과 問題點 등을 깊이 分析 指摘하고 널리 呼訴하였으며, 1984년 4월 文公部로부터 '86.'88 文化올림픽사업 참가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同行事參加計劃의樹立 및 推進過程에서 文公部와 文教部의 關係要路에 數次 公文 또는 직접 往訪 등으로 上記 法制上의 復活과 行政上의 支援을 促求해 마지않았습니다. 다시 博物館法制定 前後에도 政府機關은 물론 國會에 까지 나아가 文公委의 여러 議員에게 간곡히 協助를 要請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上記한 비화 같이 結果는 博物館法에도 完全 削除되었고, 政府에서는 尚今 아무런 解決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實情입니다(別添「古文化」24輯 參照).

3. 이에 本協會는 第23回 學術發表會 및 第29回 總會(1985. 10. 18. 木浦大學 도림캠퍼스) 席上에서一同이 意見을 모아 現下 國家教育改革政策의 最高 審議決定 機關인 貴審議會에 이 實情을 呼訴하고, 大學教育의 真正한 發展과 아울러 民族文化의 振興 및暢達을 위해 각 大學博物館이 그 所任을 다할 수 있도록 大學設置基準令上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博物館關係條項의 復活을 建議 要請하는 바입니다.

가. 4年制 大學에는 博物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나. 大學博物館에는 展示室 收藏庫 研究室과 事務室 등 기타 必要한 附帶施設을 두어야 한다.

다. 大學博物館에는 專任學藝研究員을 두어야 한다.

다시 한 번 貴審議會의 巨視的 努力에 의해 大學博物館이 本然의 位置에 蘇生 發展하여, 우리나라의 教育을 보다 內實 先進化시키고, 民族文化의 保存 研究와 暢達에 크게 寄與하며, 나아가 現下 舉國의 課題인 '86.'88 文化올림픽 行事에도 大學博物館이 그 使命의 一翼을 능히 完遂할 수 있게 되기를 衷心으로 懇望해 마지 않습니다.

※ 參考로 本協會에서 作成한 「大學博物館關係法規 其他」 1부와 本協會의 現況 및 그간의 經緯를 짐작하는데 도움되기 위해 機關誌 「古文化」 제24~26輯 각 1부를 첨부합니다.

1985年 10月 30日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 서울新聞 第12317號 1984年 12月 27日 (木曜日) 6面 記事 全文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大學博物館들이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현행 大學設置基準令에 대학박물관을 예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이번 국회를 통과한 博物館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전국 대학박물관은 사실상 설 자리로 잡은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은 모두 53군데에 이르고 있다. 이들 박물관은 55년의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 출범했다. 그리고 종합대학의 경우는 67년에 이를 보강, 학생 2천명 안쪽은 450m², 그 이상은 600m² 이상 박물관을 확보토록 법제화한 바 있다.

대학박물관 설치의 법제화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교육방법에서 탈피하려는 뜻으로 이루어졌다. 대학박물관들은 지금까지 實物에 의한 直觀教育의 중요성을 일깨워오는 가운데 유물의 수집보호·유적조사 발굴 등 숱한 학술적 업적을 남겨 왔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은 최근 일관성 없는 정책과 박물관역할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첫 시련은 대학박물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2년 12월 문교부가

材掲載하였고, 文化放送에서는 1986. 11. 16日 저녁 9시 MBC 뉴스테스크²⁰⁾에서 取材放送하였다), 大學博物館設置의 大學設置基準令上의 還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든 大學博物館의 基礎를 송두리째 훼는 이不幸한措置는 곧바로 各大學當局의 便直的行政運營에反映되어 '法制上 있었던 것이 없어짐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보다도 百倍나 不利한' 零圍氣가漸次深化됨으로써 大學博物館은 날로 本然의 機能과 活動이 萎縮됨은 물론 그 存在마저도 威脅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古文化 第24輯 및 27輯 p. 140 參照)

여기서 大學博物館과 1984年 12月 31日字로 公布된 「博物館法」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개정한 大學設置基準令 제11조(부속시설)에 예시한 「부속시설」에서 박물관은 아래 빠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비와 함께 정수하던 박물관비 항목이 삭제되어 전시·유물수장 및 관리·연구 등 박물관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대학 박물관들은 경직된 학교행정운용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문교부가 시달한 「84학년도 학교법인 및 대학재정운영자침」에 산편성기준에 도서확보(학생 1인 2만원 이상) 도서판운영개선안을 언급했을뿐 박물관 관계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박물관이 학문연구라는 고유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박물관법에 적용시켜 국가가 육성지원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博物館法은 제1조(定義) 제1호에서 박물관을 「지방자치단체, 민법에 의한法人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법인이 설치하는 것」으로 뜻밖이 대학박물관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학박물관이 私設博物館에 비해 많은 박물관자료를 소장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대학박물관을 법적으로 지원, 민족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학박물관 준립을 위협하는 법적 보호육성체의 미흡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즈음한 문화올림픽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韓國大學博物館協會는 정부 요청에 따라 문화올림픽에 58개 회원교가 A그룹과 B그룹·특별기획전그룹으로 나누어 참가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미 계획까지 세웠다.

71억 9천 5백만원 예산 가운데 60%인 43억 1천 7백만원은 자체부담기로 하는 등 참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에 대해 許善道 대학박물관협회장(國民大學博物관장)은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대학박물관 육성과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박물관이 놓인 위치에서는 자율적인 문화올림픽참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박물관협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설치기준령에서의 대학박물관 설치의무화 ▲박물관 위치 정립 및 학예원 배치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대학예산의 박물관비 확보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黃圭鎬기자>

20) 1986. 11. 16 MBC 9時 뉴스放送 全文은 다음과 같다.

많은 綜合大學校의 大學博物館이 設置되고 있읍니다만은 본래의 教育的機能을 살리지 못하고 專攻學生들의 實習場이나 또 遺物保管倉庫 구실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어서 活性화方案이 論議되고 있습니다. 大學의 圖書館이 文獻이 中心이라면 博物館은 傳統문화의 現場學習場으로서 大學文化의 兩大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年制 綜合大學의 경우 全國 58個校에 設置된 大學博物館은 우리나라 全體 博物館 7자위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國寶級文化財를 包含한 遺物과 遺蹟의 發掘調査, 그리고 保存과 研究 등에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一部大學의 博物館은 一時의으로 學校의 聲價를 높이는 發掘調査나 欲비싼 遺物의 蔽集에 치우쳐 一般公開를 거려하는 등 本然의 任務인 學問的, 社會的 教育機能을 外面하고 있다는 指摘을 받고 있습니다.

“政治·經濟·社會의 모든 學科 모든 學生에게 授業中 우리의 文化的 現場을 직접 接하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文化的 貞髓와 傳統을 뼈으로 몸으로 실체 實感케 教育시키는 것이 가장 基本的 機能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大學博物館協會長 國民大學博物館長 許善道教授 인터뷰)

博物館關係者들은 우선 全國의 大學博物館이 지나친 特性化에 앞서 각 時代와 地域別 遺物을 풀고루 갖춰 놓고 展示의 活性화와 公開講座 등을 통해 所屬 學校學生은 물론 地域住民들에게 까지 文化財에 대한 最少限의 識見을 심어 주는 教育機能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82年末 大學設置基準令에 例示한 大學의 附屬施設에서 除外된 博物館의 設置를 義務化하고 教課過程에 博物館 實習을 包含시키는 등 制度의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韓國大學博物館協會는 이처럼 제 機能을 살리지 못하는 大學博物館의 現況과 發展方案에 관해 다음달 12일 學術發表會를 開催할 豫定입니다. MBC NEWS 신 병식입니다.

들必要가 있을 것 같다. 이 역시 結論的으로 말해 그間 大學博物館側의 至大한 關心과 적극적 努力의 보람도 없이 大學博物館은 이에도 包含되어 있지 않다.

文公部 主管의 博物館法制定 움직임은 일찍부터 있었던 터로(世界 最初의 博物館法은 1845年 英國의 「museum Act of 1845」인 것 같다), 本協會에서는 일찌기 1975年 6月 2일의 第9回 學術發表會에서 이미 李蘭映氏를 招請하여 「博物館法 制定에 關하여」를 發表 論議하였고, 1978年 6月 26일에는 國立博物館에서 열린 博物館法制定公聽會에 代表를 派遣하여 意見을 開陳하였으며(當時 協會長 黃壽永 東國大館長), 다시 「古文化」第17輯(1979年 5月刊)에는 孫寶基 延世大館長 執筆의 博物館法 制定에 관한 意見 및 同法 制定에 도움주기 위한 國際博物館協議會(ICOM)規約의 全文翻譯을 收錄하였다. (古文化 第17輯 및 21輯 p. 16 參照)²¹⁾

이같은 誠意와 努力이 反映되었음인지 1984年 4月에 이루어지고, 모든 博物館의 育成을 根本趣旨로 한 文公部 草案의 博物館法에는 당시 全國의 全 博物館中 우선 數의으로 65% 以上을 차지하는 大學博物館도 分明히 包含되어 있었으나, 그후 文教部側의 異議提起로 因해 刪除되어 버렸다. 以後 國會通過(1984年 12月)에 이르는 동안에 協會로서 大學博物館이 法制上 合理的으로 또 確固하게 處理되도록 努力하였음은勿論이나(古文化 第24輯 p. 48 參照), 끝내 虛事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大學博物館은 이제 法制上 孤兒的 存在로 轉落되어 크게 혼들리고 있는 것이다. 大學博物館을 包含시키지 않은 上記 「博物館法」의 該當條項은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博物館”이라 함은 人類·歷史·考古·民俗·藝術·自然·科學·產業 등에 관한 資料를 蒐集·保存·展示하고 이들을 調查·研究하여 一般公衆의 社會教育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중 地方自治團體, 民法에 의한 法人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의 法人이 設置하는 것으로 이 法에 의하여 登錄한 것을 말한다.
2. “公立博物館”이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博物館을 말한다.
3. “私立博物館”이라 함은 民法에 의한 法人 또는 第1號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法人이 設置하는 博物館을 말한다.

大學博物館을 博物館法에 包含시키지 않는 措置는 大學博物館의 基本機能과 使命의 教育에 있음에 비추어 能히 理解될 수도 있는 虛事이다(마땅히 大學設置基準令에 規定되어야 合當하다). 博物館法에 包含시키는 當爲性은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機能과 使命보다도 그 文化的 學術的 社會的 機能과 使命을 보다 重視하는데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現行 法制上 아무런 根據도 없는 大學博物館에게 緒頭에서도 밝혔거니와 다음 發表者에 의해서 크게 浮刻되는 바와 같이, 國家의 重要遺物 및 遺蹟의 調査와 發掘을 그토록 全幅 委任 實施케 하는 現在의 政府處事는 아무래도 首肯이

21) 이외 지금 筆者の 案上에 있는 資料에 의하면 1976年 12月 17~18兩日間 國立中央博物館에서 第1回 「博物館發展을 위한 쎄미나」를 開催하였는 바 그 主題와 發表者는 다음과 같다.

1. 大學博物館發展方案：秦弘燮(梨大博物館長)
2. 國立博物館의 回顧와 展望：尹武炳(忠南大博物館長)
3. 私設博物館의 育成方案：李宗馥(中央日報 論說委員)

가지 않는다. 어떻든 大學博物館의 法制上 地位는 보다 높은 國家的, 民族的 次元에서 圓滿 確固하게 時急히 檢討 定立되어야 할 重要課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V. 結 言

'大學의 主人은 學生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오늘날 흔히 잘못理解되는 바와 같이 學生들이 大學의 일을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바라는대로 할 수 있고, 해야한다는 뜻이決코 아니다. 그 참뜻은 무릇 大學內의 모든 機能과 使命은 窮極的으로, 다시 말해 第一次的으로 教授의 研究를 복돋우거나 職員의 職場生活을 保障하는데 있는 바 아니고, 學生들을 가르치고 키우는데 最優先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大學博物館도 大學內의 한 機關인만큼 이 哲理와 原則에서 벗어날 理 없다.

오늘날 우리 大學博物館은 그間 國家와 民族의 次元에서 文化的으로 民族傳統文化財를 保存(收藏)하고, 이를 學術的으로 調査(發掘)研究하며, 社會的으로 地域社會文化의 昂揚에 크게 寄與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決定的으로 1982年末 大學設置基準令上의 削除措置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下에서 流浪 내지 苦戰 奮鬥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과 結果는 쉽게 그리고 가까이 말하면 政策(文教)當局과 各 大學行政當局者の 大學博物館에 대한 無關心과 沒理解에서 말미암았다고 하겠지만, 깊숙히 그리고 멀리 살펴보면, 이는 그間 大學博物館 從事者들이 그 副次的 二次的 機能과 使命인 學術的 文化的 社會的 活動에 보다 注力하고, 그 基本的一次的 機能과 使命인 教育的 活動을 차라리 疏忽한 面에서 온 業報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터이다.

國家 내지 大學의 모든 公事(行政)는 심지어 傳統文化政策과 民族文化事業까지도 이를 직접 管掌하고 決斷하고 執行(紛爭解決의 경우는 判決)하는 權限과 責任은, 考古·歷史·美術 등 이른바 이 關係專攻出身者가 아니고, 主로 法政系出身이거나 經商 또는 理工系出身인 公職者들에 있고, 이는 國家行政組織上, 東西古今 언제 어디서나 共通의 順理인 것이다. 우리는 그間 이들 公職者들에게 實物을 통해 博物館에서 民族傳統文化의 實相과 이를 保存 傳承 閐揚하는 일이 그 얼마나 重要하고 값어치있고 어려운가를 具體的으로 誠心껏 힘껏 가르치고 實感케 하려고 努力하였는가를 冷靜히 그리고 嚴酷하게 直視 反省해야 한다. 學窓時節에 博物館이 大學構內에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를 그 아무리 外面하여도 無妨했으며, 傳統文化 역시 입이나 글로만 배우고 외워도充分하였던, 다시 말해서 遺物과 原典에는 한번도 直接 對할 必要조차 느끼지 않았던 오늘의 公職者들이 大學博物館 내지 民族傳統文化 全般에 대해 無關心하고 没理解함은 오히려 當然한 歸結일 것이다. 누구라도 배우고 보고 體驗하지 않고는 그 어떤 事物에 대해서도 그 內容과 價值와 어려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 역시 처음부터 '生而知之' 한 바가 아니고 그間에 배우고 보고 體驗하였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알고 痛感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大學博物館의 任務와 役割은 실로 重且大하다. 國·公立이나 私立博物館이 先進外國과는 달리 우리 周圍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위에, 初·中·高校에 學內 博物館施設이 거의 없는

이 時點에서, 적어도 4年制 大學의 모든 學生에게만은 우리 傳統文化의 真相과 그 傳承 및 啓發에 必要한 여러가지 事項을 實物을 통해 實感나게 教育해야 할 必須性과 緊急性은 絶對的이다. 過欲이라 할지 모르나 筆者는 博物館에서의 實物(直觀)을 통한 民族傳統文化教育은 教養國語나 國史처럼 4年制 大學에서는 1學點 정도는 必須的으로 課해져야만 國民的 次元에서의 真正한 民族文化傳統의 啓發과 傳承과 闡揚이 이루어질 것으로 確信하고 있다.

우리는 정녕 自己犠牲의 覺悟를 갖고 모든 努力を 校內에서의 教育活動에 集中시키면서, 大學博物館 本然의 姿勢는 特殊 專門博物館이 아닌 一般 綜合 教育博物館이어야 함을 銘心해야 한다. 教育目的을 第一로 하는 收藏品 蔽集부터 시작하여 展示空間을 最優先으로 確保하고, 公開時間은 最大限으로 保障하며, 可能한限 알차고 詳細한 각종 案內(說明)道具를 갖추어 學生 한사람이라도 그 발길이 더 博物館에 와 닿도록 誠心껏 힘껏 努力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收藏品對象을 大部分 우리 民族傳統文化財에 局限하다시피 하는 實情은 現在의 與件上 不得已하여 이려할 뿐이지, 教育을 第一義로 하는 大學의 博物館에 있어서는 마땅히 世界人類의 文化遺產 全般까지도 널리 收藏하고 展示해야함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우리 會員校一同은 一致團結하여 協會創立 당시의 根本趣旨를 恒時 깊이 되새겨 大學博物館의 全大學에의 擴充을 위해 積極 啓蒙·協助하는데 合心 努力해야 한다. 또 現在 設立되어 있는 大學博物館中에도 거의 程半에 이르는 數(會員校)가 여러가지 與件上 아직도 그 施設과 運營이 可謂 寒心하다 할 정도로 심히 未備·不振한 現實을 直視하고 이를 最少限 本然의 機能과 使命대로 活性化시키는데 우선 主眼을 두어, 바꾸어 말해 現在 상당히 與件을 갖추어 運營과 活動이多少 活潑한 몇몇 높은 大學(會員校)의 基準에서가 아니고, 낮은 大學의 基準에서 오늘날의 이 低調한 韓國의 大學博物館을 振作하고 活性화하는데 最善을 다해야 할 터이다. 이같은 先驅者的 犧牲과 努力은 가까이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들이 責任진 大學博物館의 基本機能과 任務를 다하는 바이고, 멀리는 將來의 大學博物館으로 하여금 百萬援軍을 얻어 盤石 위에서 力量껏 欲望껏 그 機能과 使命을 다 할 수 있는 礎石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안으로 韓國大學博物館協會 여러분께 虛心坦懷, 올바른 反省에 바탕한 새로운 進軍을 힘차게 展開할 것과, 밖으로 政策(文教)當局 여러분께 하루속히 1955年 당시의 慧眼을 되찾아 大學設置基準令上의 還元補完措置를 斷行함으로써, 오늘날 國家的 民族的 次元에서 정녕 必須不可缺의 存在인 大學博物館을 確固히 뒷받침해 줄 것을 거듭 強調하고 다시 要請해 마지 않는다.